

종합감사

# 종합 감사 결과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문화재단, 전남관광재단 —

2022. 5.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실)

출연기관 **(바이오산업진흥원, 문화재단, 관광재단)**

## 2022년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 【 감 사 실 시 】

- 감사기간 : 2022. 3. 21. ~ 3. 25.(5일) ※ 사전조사 : 3. 14. ~15.(2일)
- 감 사 반 : 3개반 12명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 4명(자체감사팀장 등 4)
  - 전남문화재단 : 4명(시군감사팀장 등 4)
  - 전남관광재단 : 4명(보조금감사팀장 등 4)
- 감사범위 : 2019년 1월 ~ 2022년 2월

## I | 감사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 2022년 감사계획에 따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 출연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는 주사업 운영 등 사업전반 검토
- 현장·문제해결 중심의 종합감사를 통한 적극적 기관운영 지원

### 2] 감사중점사항

- (주사업) 주사업이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 등 점검
- (인 사) 부서 내 보직 부여 적정성 및 직무태만, 복무위반, 갑질 사안 점검
- (계 약) 특혜성 계약, 불법 하도급 여부, 불공정관행 등 계약 업무 적정성
- (예 산)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 (회 계) 위법·부당한 회계처리 관행과 방만한 예산운용낭비 여부 점검

##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 1 조직 및 정·현원

| 구 분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 전남문화재단        | 전남관광재단        |
|---------------|-----------------|---------------|---------------|
| 조 직           | 2실 6센터          | 4팀 1소         | 1실 4팀         |
| 정/현원<br>(증△감) | 163/158<br>(△5) | 34/31<br>(△3) | 25/17<br>(△8) |

### 2 2022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 전남문화재단 | 전남관광재단 |
|-----|------------|--------|--------|
| 세 입 | 32,332     | 22,311 | 5,465  |
| 세 출 | 32,332     | 24,016 | 5,465  |

## Ⅲ 감사총평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문화재단, 전남관광재단은 인사, 복무, 계약, 예산, 주기능 분야 등 전반에 걸쳐 법령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총 35건의 위법·부당사항, 모범사례가 확인되어 “도 감사결과 처분심의회”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함

※ 신분상 4건, 행정상 26건(재정상 1건, 15백만 원 포함), 모범사례 5건

○ 이번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된 사항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문화재단, 전남관광재단 및 도 본청 관련 실과에 통보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주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함

## IV 감사결과

### 1 감사처분 건수 : 35건

- 신분상 처분 : 4건(훈계 4건 / 12명)
- 행정상 처분 : 26건(시정 6\*, 주의 12, 개선 3, 권고 1, 통보 4)
  - \* 재정상 조치 1건(회수 15백만 원), 재정상 처분외 5건
- 기            타 : 5건(모범사례)
- 세부내역

| 대상<br>기관         | 총계<br>(가:라) | 신분상 처분     |    |            | 행정상 처분            |                  |             |           |          |          |           |                         |           |           |           |           | 모범<br>사례<br>(다) |                 |
|------------------|-------------|------------|----|------------|-------------------|------------------|-------------|-----------|----------|----------|-----------|-------------------------|-----------|-----------|-----------|-----------|-----------------|-----------------|
|                  |             | 합계<br>(가)  | 징계 | 훈계         | 합계<br>(나<br>=A:F) | 시 정              |             |           |          |          |           | 재정상<br>처분외<br>시정<br>(b) | 주의<br>(B) | 개선<br>(C) | 권고<br>(D) | 통보<br>(E) |                 | 기관<br>경고<br>(F) |
|                  |             |            |    |            |                   | 계<br>(A<br>=a+b) | 재정상 처분(백만원) |           |          |          | 소계<br>(a) |                         |           |           |           |           |                 |                 |
| 합계               | 35          | 4<br>(12명) |    | 4<br>(15명) | 26                | 6<br>(15)        | 1<br>(15)   | 1<br>(15) | -<br>(-) | -<br>(-) |           | 5                       | 12        | 3         | 1         | 4         | -               | 5               |
| 바이오<br>산업<br>진흥원 | 17          | 2<br>(10명) |    | 2<br>(10명) | 13                | 4                |             |           |          |          |           | 4                       | 5         |           | 1         | 3         | -               | 2               |
| 문화<br>재단         | 14          | 2<br>(2명)  |    | 2<br>(2명)  | 10                | 2<br>(15)        | 1<br>(15)   | 1<br>(15) |          |          |           | 1                       | 5         | 3         |           |           | -               | 2               |
| 관광<br>재단         | 4           | 0          |    |            | 3                 |                  |             |           |          |          |           |                         | 2         |           |           | 1         |                 | 1               |

## V | 주요 지적사항

### 1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11건

#### ① 진흥원 조직운영 등 부적정

##### 1. 센터별 회계업무 수행 등 인력관리 부적정

- 진흥원은 정원이 총 163명으로 되어 있고, 센터별·직급별로 배정되어 있으며, 6개 센터별로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
-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조직 및 정원규정」 제4조 등에 진흥원의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하고, 원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업무 및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행정지원실)은 본원에서 **1명 내지 2명**의 직원이 전체 임직원들의 급여지급 등 **세무·회계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데도, 6개 센터별로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센터별로 직원 총 11명이 **같은 업무를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나, 업무 및 정원을 조정하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 없이 인력을 관리
  - 또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에 따라 친환경농생명센터는 경영 악화로 2020년에 가족수당 등 계 14,473천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다가 2020. 10. 7.에서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지급한 사례 있음
- 그로 인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지 않고 센터별로 세무·회계업무, 계약업무 등 지원업무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어 **인력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 초래

##### 2. 정원규정 비효율적 운영

- 진흥원은 센터간에 **협업**이 필요한 과제발굴 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유치 추진 필요
-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조직 및 정원규정」 제5조 제1항에 진흥원의 조직과 센터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은 바이오산업 관련 과제발굴이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시에 **조직과 인력의 조정**이 필요하고, 정원규정이 센터별로 되어 있어 **이사회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센터간 정원 조정이나 인력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정원규정에는 전체 정원만 정하고 시행규칙에 센터별 정원을 정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가 필요한데도 적극적 대책 미추진
- 그로 인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전남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이나 국가 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국고 건의사업 등에 소극적이고 부실하게 대응할 우려 초래

### 3. 경영개선으로 자립화 노력 미흡

- 진흥원은 20○○. ○○. ○○. ○○○ 원장이 취임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실용적 R&D 강화,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경영 개선”을 경영목표로 블루 바이오산업 육성을 추진
-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정관」 제8조 제7항에 원장은 임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기관발전계획(경영혁신방안 포함)과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은 국책사업,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R&D사업** 수주를 위한 전담부서가 없고, 경영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실 기획관리팀 인력은 5명에 불과하며,
- 또한 장비사용료 등 918백만원의 **채납금의 징수**를 위한 전담 부서가 없는데도 이러한 내용을 고려한 경영혁신방안 등 **진흥원 발전계획** 수립 미흡

☞ 세무·회계업무 등 지원업무는 본원에서 일괄 처리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및 정원 조정방안을 강구**하고, 국책사업, 대형 R&D사업 수주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경영혁신방안을 포함한 **진흥원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통보” 조치

## ②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이관 부적정

- 진흥원은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국 농약잔류 허용기준(IT) 과제 수행” 등 3개의 연구개발사업을 2021. 9. 1. 진흥원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에서 (주)○○으로 이관

(단위 : 백만원)

| 센터명                | 사업명<br>(발주기관)                                               | 수탁사업비           | 사업기간                        | 참여연구원                | 이관<br>사업비 |
|--------------------|-------------------------------------------------------------|-----------------|-----------------------------|----------------------|-----------|
| 계                  | 3건                                                          | 530             |                             | 27 (연구원20,<br>기간제 7) | 188       |
| 친환경<br>농생명<br>연구센터 |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국<br>농약잔류 허용기준(IT) 과제 수행<br>(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 180<br>(국비 180) | 2021.1.1. ~<br>2021.12.31.  | 연구원 7<br>기간제 3       | 110       |
|                    | 축산물 중 국내 기준 미설정 농약<br>안전관리를 위한 정량시험법 확립<br>(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110<br>(국비 110) | 2021.1. 1. ~<br>2021.11.30. | 연구원 5<br>기간제 2       | 36        |
|                    | 왕우렁이 농업적 활용을 위한<br>생태계 안전관리기술개발<br>(농촌진흥청)                  | 240<br>(국비 240) | 2021.1.1.~<br>2023.12.31.   | 연구원 8<br>기간제 2       | 42        |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에 식약처장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사유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연구개발규정」 제11조에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험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에 따라 재단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은 위탁자인 농촌진흥청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계약서상 계약자는 개인이 아닌 진흥원(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이고, 연구수행기관의 해산, 통폐합 등 연구수행기관에서 연구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더욱이 농촌진흥청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지도 않았고, 책임연구원을 변경하여 충분히 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한데도,
  - 단지 계약기간이 종료된 센터장인 ◆◆◆가 이직할 소속기관으로 변경 요구하였다는 사유로 진흥원에서 연구수행기관 변경을 진흥원에서 요구
- 그로 인하여 위 3건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했던 기간제

근로자 ○○○ 등 3명의 채용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원 27명을 투입하여 이룬 **연구 실적과 연구비 잔액** 188백만원을 이관하게 되는 등 진흥원의 행정·재정적 손실을 초래

☞ 위탁자와 계약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수행기관을 변경할 때에는 **재단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변경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권고**" 조치

### ③ 음주운전 징계 등 인사 및 복무 관리 부적정

#### 1. 소속 임직원 음주운전 여부 미확인

- 진흥원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6장 징계 및 포상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업무를 처리
- 행정안전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17. 12. 27.) III. 직원의 인사 ⑥ 징계 규정을 신설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하며, 임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계대상으로 규정
- 또한 진흥원 「인사규정」 [별표 3-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유형별로 파면에서 견책까지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44호의3 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감사실)은 감사기간인 2019년 1월부터 감사일인 2022. 3. 25. 현재까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여 징계의결 요구한 실적이 없었고,
  - 이에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은 알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 수 없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
- 그로 인하여 임직원이 음주운전 관련 수사를 받고도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규정을 유명무실하게 운영

## 2. 건강검진 공가 허가 부적정

- 진흥원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직원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
- 진흥원 「직원복무규정」 제14조 제4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규정
- 또한 진흥원 「인사규정」 제34조 [별표 3] 징계양정 기준 등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근무)을 이탈할 경우 징계하거나, 같은 규정 제54조에 따르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식품산업연구센터 등)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지원팀에 근무하는 ○○○ 등 총 8명이 11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 신청을 한 후,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용무를 처리하는 등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임직원에게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

- ☞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규정대로 운영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 ☞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 신청을 한 후,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 용무를 처리하는 등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관련자 8명에게 “**훈계요구**” 하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 ④ 장비사용료 할인기준 적용 및 징수 부적정

### 1. 장비사용료 할인 산정 부적정

- 진흥원은 도내 투자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19년부터 '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장비사용료\*를 381건, 248백만원 할인 추진
- \* 장비사용료 = (이용단가×사용량)+직접비+간접비
-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 사용규정」 제21조에 장비사용료는 별표 3의 장비사용료 산출기준에 따라 각 센터장이 정하고,

할인율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은 장비 할인율 적용을 실소요경비에 해당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이용단가**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하는데도, **전체 사용료**를 대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11건, 2,005천원**의 장비사용료를 부과 누락
- 그로 인하여 진흥원은 시설·장비 사용료 산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장비사용료 부과를 누락하여 건전한 재정확충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진흥원의 목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 2. 장비사용료 징수관리 부적정

- 진흥원은 2021년말 현재 장비사용료가 22건 287백만원 체납 발생
-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 사용규정」 제21조의3에 센터장은 사용자가 장비사용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등 법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식품산업연구센터 등)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차량 등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방치
- 그로 인하여 진흥원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비사용료 **45,893천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재정자립도 감소 및 재정적 손실을 초래

☞ 장비사용료 할인기준을 숙지하여 부과 누락을 방지하도록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장비사용료 체납 시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 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예정가격 검토 부적정

### 1.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 진흥원은 ‘19년부터 ’20년까지 잇바디 돌김을 고부가가치 특산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잇바디 돌김 추출물의 구강케어 치유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 용역명                                 | 용역<br>기간                        | 계약금액<br>(천 원) | 계 약<br>상대자     | 1차                              |            | 2차                              |            | 재공고사유<br>(긴급입찰<br>사유)  |
|-------------------------------------|---------------------------------|---------------|----------------|---------------------------------|------------|---------------------------------|------------|------------------------|
|                                     |                                 |               |                | 공고일                             | 참가<br>업체 수 | 공고일                             | 참가<br>업체 수 |                        |
| 잇바디 돌김<br>추출물의 구강<br>치유에 대한<br>임상시험 | 2019.10.29.<br>~<br>2020.10.28. | 50,000        | ○○대학교<br>산학협력단 | 2019.09.24.<br>~<br>2019.10.04. | 1          | 2019.10.11.<br>~<br>2019.10.21. | 1          | 입찰<br>참가업체 수<br>미달로 유찰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시에 입찰공고문에 사업내용·기간·예산액·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해야 하고, **제안요청서**에는 과업내용·요구사항·계약조건·제안서에 대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재공고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공고했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은 상기 용역계약이 **유찰**이 되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당초에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sup>1)</sup>을 적용한 평가와 협상과정을 실시하지 않고, 계약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데도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체결
  - 그로 인하여 진흥원은 임상시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에는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2020. 10. 15. **계약을 타절**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기회를 일실하는 결과를 초래

## 2. 1인 전적 수의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 검토 소홀

- ☐ 진흥원은 재단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과 일반경쟁에 따라 체결함을 원칙으로 계약업무를 추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

1) 기술능력평가(정량 20%, 정성 6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기준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계약담당자는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생물의약연구센터 등)은 ScaA 기반 쯔쯔가무시병 백신 개발 비임상 시험용역 등 35건의 용역분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실례 가격 등을 반영한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여 가격협상에 임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에 **낙찰률**도 적용하지 않은 채, **견적가격 100%**를 그대로 최종 계약금액으로 결정

- 그로 인하여 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하여 적정 낙찰률을 적용하고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검토과정을 소홀히 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66백만원의 예산 절감 기회를 일실

☞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당초에 공고한** 평가와 협상과정을 진행 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거래실례가격 등을 **예정가격**으로 검토 후 적정 **낙찰률**을 적용·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 ⑥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부적정

- 진흥원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체제로 개편 후 「재단법인 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 재산관리규정」 등에 따라 재산(물품)관리 업무를 처리
- 진흥원 「재산관리규정」 제6조에 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규정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그리고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등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불용품 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매각이 부적당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행정지원실 등)은 재단 설립 후 현재까지 **재물조사를 추진하지 않아**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없어진 물품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불용결정,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등을 이행하지 않고 **창고 등에 방치**
- 한편, 감사기간 동안 물품의 표본조사 결과 83대의 PC(노트북, 데스크탑)가 사용할 수 없으나 불용결정 없이 창고 등에 방치되고 있거나 물품의 소재가 불명확 하였으며,
- 결과적으로 2021년말 기준 기관의 결산서에 PC 83대, 252백만원의 유형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기관의 **자산이 과대평가**
- 그로 인하여 진흥원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무단점유나 훼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자산을 실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기관의 목적 달성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효율적 자산운영을 저해

☞ 효과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공정한 폐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 7 복리후생비 지원 부적정

### 1. 장기근속자(10년) 포상품 지급 및 직원 상해보험가입 부적정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10년이상 장기 근속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품 지급 및 업무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보상과 상해관리를 목적으로 직원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소속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념품 지급 및 포상 등에 대해 예산집행은 불가하도록 규정
- 또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7조 제2호 나목에 복리후생비는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외부감사의 감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폐지·축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은 '19년부터 '21년까지 10년이상 장기 근속한 임직원 46명에게 순금카드(3.75g)를 제작(14,465천원)하여 포상품으로 지급하였으며,
  - 그리고 진흥원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인별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여 단체보험을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3년간 471명에게 43,261천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규정에도 없는 직원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중복지원
- 그로 인하여 진흥원은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

## 2. 피복비 지원 부적정

- 진흥원은 임직원 및 위촉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명목으로 근무복 및 실험·작업복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 집행하도록 규정
- 한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간의 단체협약서」 제91조에 생산부서(실험실 포함) 근무자에게는 매년 1회, 기타부서 근무자에게는 2년에 1회 지급하도록 협약
  - 그런데 진흥원은 '19년부터 '21년까지 생산부서(실험실 포함) 근무자를 위한 작업복과 실험실 가운 지급 외에도 344명에게 일상근무복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41,935천원을 집행
- 그로 인하여 진흥원 내의 일부 연구센터에서는 생산부서 근무자에게 피복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피복비를 지원하지 않아야 할 행정지원부서는 지원하는 결과 초래

☞ 앞으로 복리후생비를 중복 또는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조치

## 8 연구과제 시험연구비 등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19년부터 '21년까지 연구개발, 성능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6,190백만원의 예산액으로 시험연구비 등 소모품 구입 수의계약 체결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물품·용역의 소액수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계약법」 제25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9조에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시험연구비 등 연구 소모품을 필요로 하는 시기 때마다 계약 당사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총 6,190백만원의 수의계약 체결
- 그로 인하여 진흥원은 소모품을 구입할 때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위 사업별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으로써 연간 2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연간 시험연구비 등 소모품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단가계약을 통하여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조치

## 9 입주기업 입주자 관리 부적정

- 진흥원은 '19년부터 현재까지 152개 입주기업의 대상선정, 입주기간 연장 등의 입주기업 관리업무 추진

### 1. 입주기업 대상선정 부적정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 사용규정」 제5조 등에 입주대상은 입주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로 심의위원별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선정 하고, 신규창업 예정자 입주시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천연자원연구소)은 선정된 입주기업 1개소의 경우 심의위원별 평가점수가 57점인데도 입주기업으로 선정
  - 또한 선정된 신규창업자 3명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적게는 52일에서 많게는 2,972일 경과 되었는데도 방치
  - 특히 신규창업자 1명은 8년 8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회 입주 연장을 승인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등 신규 창업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 그로 인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다른 신규창업 예정자에게 기회를 박탈 하는 결과 초래

### 2. 입주기업 입주연장 부적정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 사용규정」 제10조 등에 입주 기간 연장 시 입주 계약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연장신청 접수 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천연자원연구센터 등 2개 센터)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22개 업체가 적게는 7일에서 많게는 30일 늦게 입주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 특히 식품산업연구센터 등 2개 센터는 3개 업체가 입주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입주 연장 신청하도록 하여 연장 처리
  - 또한 나노바이오연구센터 등 4개 센터는 24개 업체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적게는 3일에서 많게는 51일이 지나 통보

- 그로 인하여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고, 신규 입주기업과 기존 입주기업과의 입주기회 제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

### 3. 입주기업 임대료 등 연체자 관리 부적정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 사용규정」 제17조의2에 임대료, 시설관리비, 공과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입주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조치를 하고, 연체자에게 압류 등 법적 조치하도록 규정
  - 그런데 바이오산업진흥원(식품산업연구센터 등 4개 센터)은 '22. 3. 25. 감사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18개 업체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을 단 한 차례도 미 실시
  - 더욱이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로 12건의 입주 계약을 해지 하고 자진 퇴거하도록 내버려 뒀 더욱 징수가 어려워진 상태임
- 그로 인하여 감사일 현재 68,764천원의 체납으로 '21년 재정자립도가 전년 79% 대비 77.5%로 1.5p 감소되는 결과 초래

- ☞ 입주기업 선정 시 획득한 점수가 부족한데도 대상자로 선정하고, 신규창업 예정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소홀히 한 업무 담당 팀장, 담당자 “훈계요구”
-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창업 예정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차량 압류 조치하도록 “시정요구”
- ☞ 입주기간 연장 시 신청 및 결정·통보기한을 준수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 10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 진흥원은 '19년부터 현재까지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3건의 품질 시험 및 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를 추진

### 1. 품질관리계획 업무처리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는 적절한 기술인(기본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배치)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천연자원연구센터는 3개 사업장에서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미승인하고, 부적정한 기술인을 배치하였는데도 미조치

- 그로 인하여 부실사고를 위해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공사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2. 안전관리계획 업무처리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98조 등에 항타·항발기 등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천연자원연구센터는 3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미승인

- 그로 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초래

☞ 건설업체에서 제출한 품질시험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 11 하자검사 미 실시 및 하자보수 관리 부적정

- 진흥원은 '19년부터 현재까지 132억 5,163만원을 투입하여 총 23건의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된 시설물을 관리

- 「지방계약법」 제20조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식품산업연구센터 등 3개 센터는 하자검사 대상 23건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53회 실시하여야 하는데 27회(시행률 50%)만 실시

- 그로 인하여 하자발생에 따른 적기에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 ① 국내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 위 재단(문화재연구소)은 '21. 1월부터 '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문화재 학술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국내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음

### 1. 국내여비 부당 수령

- 「재단 여비규정」 제8조 제1항 등에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며,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하고, 숙박비·식비·일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또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 등에 국내 출장자는 **운임,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의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재단(문화재연구소)은 '21. 1월부터 '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 등 11명이 **출장이행 증거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1,438만원의 여비**를 **부당** 청구하여 지급\*\*받음
- \*\* ('21.1월~'22. 3. 25.) 1인 부당수령액 : (최대) 334만원 (최소) 10만원
- ※ 감사기간 동안 문화재연구소 출장 증거서류없이 지급받은 여비 1,938만원에 대한 출장 증거서류를 제출 요청한 결과 ⇒ **1,438만원에 대한 출장 증거서류 미제출**
- 그로 인하여 국내여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목적외로 사용되는 결과 초래

### 2. 현지출장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 「재단 복무규정」 제13조 등에 주 12시간, 월 3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 한편 위 재단(문화재연구소)은 '16. 7월 「**학술조사 현장출장시 시간외 근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술조사 현장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소장이 근태현황 및 근무내용을 확인하도록 함
  - 그런데 위 재단(문화재연구소)은 '21. 1월부터 '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출장이행 증거서류가 없는데도 ○○○ 등 5명이 6일간 현장출장 시간외 근무수당 85만원을 부당 청구하여 지급\*받음

\* ('21. 1월~'22. 3. 25.) 1인 부당수령액 : (최대) 41만원/14시간, (최소) 11만원/3시간

- 그로 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부당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목적외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

- ☞ 부당하게 지급받은 국내여비 1,438만원과 현장출장 시간외근무수당 85만원 등 총 1,523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 ☞ 앞으로 국내여비를 청구할 시에는 운임영수증 등 출장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요구” 조치

## ②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재단(기획경영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월말 기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중이며, '20. 3월과 '20. 6월 2회에 걸쳐 소속 직원 7명을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임용

### 1.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 「재단 근무평정 운영규칙」 제12조에 근무성적평정은 역량과 업적평정 실시 후 종합하되, 업적평정은 부서 및 개인의 업무계획 및 실적을, 역량평정은 직위·직급별 또는 직무별로 평가하도록 규정

[표] 근무성적평정 체계 현황

| 팀장 | 역량평정(30점)            |                      | 업적평정(70점)   |                   |                |                      | 가·감점       |               |
|----|----------------------|----------------------|-------------|-------------------|----------------|----------------------|------------|---------------|
|    | 1차<br>(사무처장,<br>70%) | 2차<br>(대표이사,<br>30%) | 부서별 평가(70점) |                   |                |                      | 가점         | 감점            |
|    |                      |                      | 공통<br>(40%) | 부서별(60%)          |                | 가점                   |            |               |
|    |                      |                      |             | 부서지표<br>설정평가(40점) | 목표달성도<br>(60점) | 부서표창<br>전년평가<br>신규사업 | 포상<br>신규사업 | 교육미이수<br>근태점검 |

| 팀원 | 역량평정(30점)          |                      | 업적평정(70점)          |                      |             |                       |                    |    | 가·감점 |    |
|----|--------------------|----------------------|--------------------|----------------------|-------------|-----------------------|--------------------|----|------|----|
|    | 1차<br>(팀장,<br>50%) | 2차<br>(사무처장,<br>50%) | 개인별 평가(40점)        |                      | 부서별 평가(30점) |                       |                    | 가점 | 감점   |    |
|    |                    |                      | 1차<br>(팀장,<br>50%) | 2차<br>(사무처장,<br>50%) | 공통<br>(40%) | 부서별 (60%)             |                    |    |      | 가점 |
|    |                    |                      |                    |                      |             | 부서지표<br>설정평가<br>(40점) | 목표<br>달성도<br>(6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런데 위 재단(기획경영팀)은 '19년 근무성적평정에서 부서별 평가 점수를 42명 전원에 대하여 오류\* 및 포상 가점도 18명에게 과다, 2명에게 누락

\* 예) '19년 기획경영팀 85.60점(산정자료 없음) → 감사결과 87.08(1.48점 과소계산)

- 또한 '20년 근무성적평정('21. 1월 기준)에서도 부서별 평가 점수를 39명 전원에 대하여 오류\*\* 및 포상 가점도 12명에게 과다 반영

\*\* 예) '20년 문화예술교육팀 82.90점(산정자료 없음) → 감사결과 85.18(2.28점 과소계산)

- 그로 인하여 정당한 등급보다 '19년에는 5명이 상승, 2명이 하락하였고, '20년에는 1명이 상승, 2명이 하락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이 저해

## 2. 의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승진임용 부적정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안부)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전보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규정
- 또한 「재단 인사규정」 제22조에 대표이사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 직원에 대한 청렴, 4대폭력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이 포함된 연간 5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실적을 인사에 반영하도록 규정
- 한편 위 재단은 '19. 1월에 4대 폭력예방(4시간), 개인정보보호(1시간), 소프트웨어 관리(1시간), 산업안전보건(1시간), 윤리·청렴(2시간), 장애인 인식개선(1시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

- 그런데 위 재단(기획경영팀)은 '20. 3. 30.과 '20. 6. 30. 8급에서 7급으로 7명을 승진시키면서 승진대상자 모두가 의무교육 이수실적이 미충족한 채 50시간 교육 이수실적만 충족하였는데도 승진임용

- 그로 인하여 의무교육 미이수로 승진 자격요건이 미충족된 자가 승진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

- ☞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총괄한 업무담당팀장에 대하여 “**훈계요구**” 조치
- ☞ 「재단 근무평정 운영규칙」 상의 **부서별 평가 절차, 방법, 기준 및 가점 부여 기준을 명확히**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제도상 개선요구**” 조치

### ③ 채용관련 서류전형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재단(기획경영팀)은 '20. 8월에 운영직 1명, '20. 10월에 일반직 8급 1명을 채용공고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임용
  - 「재단 직원 임용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경력** 등의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도록 규정
  - 한편 위 재단(기획경영팀)은 '20. 8. 5. 시설관리 분야 운영직 1명의 채용공고에서 ① 공기조화기 자격증 소지 ② 보일러 취급 자격증 소지 ③ 건물 시설관리 2년 이상 경력 중 1개 이상을 필수자격으로 공고
    - 그런데 위 재단(기획경영팀)은 '20. 8. 24. 서류전형에서 필수자격증도 없고 건물 시설관리 2년 이상 근무경력도 미확인된 자를 적격자로 처리
  - 또한 '20. 8. 20. 일반직 8급 1명의 채용공고에서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행정업무 1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필수자격으로 공고
    - 그런데 위 재단(기획경영팀)은 '20. 10. 13. 서류전형에서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적격자로 처리

| 채용 분야    | 응시자 | 공고문 상 필수자격 요건                    | 응시자 제출사항                    | 서류전형 |                               |
|----------|-----|----------------------------------|-----------------------------|------|-------------------------------|
|          |     |                                  |                             | 재단   | 감사 결과                         |
| 운영직      | ○○○ |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자               |                             | 적격   | 부적격                           |
|          |     | ① 공기조화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건설기계 조종사                    |      | 불충족<br>(미소유)                  |
|          |     | ② 보일러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                               |
|          |     | ③ 건물 시설관리 2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 ○○ 근무<br>(선실 장비 설치, 2년 2개월) | 충족   | 불충족<br>(해당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없음)    |
| 일반직 (8급) | ○○○ |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행정업무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재단 근무<br>(1년 2개월)         | 충족   | 부적격<br>(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해당 안됨) |

- 그로 인하여 응시자격에 미달된 자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임용되는 결과가 초래

- ☞ 서류전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훈계요구**” 조치
- ☞ 앞으로 채용관련 서류전형 시 공고문에 명시한 채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적격자로 처리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 4 가점 관련 규정 불합리 및 인사원칙 미공개

- 위 재단(기획경영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월말 기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중이며, **승진요인 발생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표창 실적을 합산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승진인사를 추진

##### 1. 가점 관련 규정 불합리

- 「재단 근무평정 운영규칙」 제11조에 근무평정 대상기간(1~12월) 중의 가·감점을 종합 근무평정에 반영하되 소속 직원이 취득한 표창 실적은 0.5점에서 3점까지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규정

| 구 분  | 내 용                | 근무적평정 시 개인별 가점 점수  | 점수 부여 |
|------|--------------------|--------------------|-------|
| 외부기관 | 대통령 표창             | 3점('19. 8월 이전은 5점) | 취득연도만 |
|      | 장관급 표창             | 2점('19. 8월 이전은 3점) |       |
|      | 전남도지사, 정부부처 차관급 표창 | 1점('19. 8월 이전은 2점) |       |
|      | 직무관련 대외기관장 표창      | 1점                 |       |
| 내부기관 | 재단 이사장(대표이사) 표창    | 0.5점               |       |

- 그런데 위 재단(기획경영팀)은 '18. 7월부터 '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직원이 취득한 개인별 표창 실적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에서 0.5점에서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 승진요인 발생 시 작성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0.5점에서 5점의 표창 점수를 표창 취득연도부터 승진하는 연도까지 중복·누적하여 부여 중

| 구 분  | 내 용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개인별 표창 점수 | 점수 부여                  |
|------|---------------|-------------------------|------------------------|
| 외부기관 | 대통령 표창        | 5점                      | 취득연도부터<br>승진연도까지<br>누적 |
|      | 국무총리 및 장관급 표창 | 3점                      |                        |
|      | 도지사 표창        | 2점                      |                        |
|      | 대외기관장 표창      | 1점                      |                        |
| 내부기관 | 대표이사 표창       | 0.5점                    |                        |

- 그 결과 소속 직원 개인별 표창 실적이 근무성적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에 중복으로 인정되어 승진인사에 과다 반영될 우려를 초래

## 2. 인사원칙 미공개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안부) 등에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재단(기획경영팀)은 '19. 12월부터 '22. 2월까지 6번의 인사를 하면서 인사운영 방향·기준 등의 인사계획을 미수립 및 미공지 한 채 인사시기별로 인사대상, 일정, 인원만을 예고한 후 인사를 추진
  - 그로 인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이 저해되었고 소속 직원들이 인사와 관련하여 대비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

- ☞ 재단 인사 관련 규정에서 중복 적용 중인 표창 실적 가점에 대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상 개선요구”** 조치
- ☞ 앞으로 인사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여 예측가능한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요구”** 조치

## ⑤ 문화예술 보조사업 업무 추진 부적정

###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미이행

- 위 재단(문화사업팀, 문화예술팀)은 '19년부터 '22년까지 전라남도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802억원(국 339, 도 387, 군 76)으로 공연장 상주단체지원사업 등 157개 사업을 추진
-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고,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확정한다고 규정

- 그런데 위 재단(문화사업팀, 문화예술팀)은 '19년부터 '21년까지 공연장상주단 체육성지원사업 등 종료된 12건의 보조사업 집행액 110억원 정산보고서를 전라남도예 제출하여야 했는데도 감사일 현재 정산 검사를 미이행
- 또한 '22. 3. 25. 현재 사업 완료 후 道(○○과, ○○과)에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확정통보를 받지 못하여 28개 사업 8억 7천만원을 예산을 편 성했음에도 미반납하고 있는 실정

○ 그로 인하여 집행된 보조금 110억원이 확정받지 못하고 집행잔액, 이자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결과 초래

##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2-1 마한문화권 관련 행사 집행 부적정

- 위 재단(문화재연구소)은 '20년과 '21년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마한 학술경연대회, 마한문화유산답사 문화행사 수행
- 「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는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행사·홍보비에서 집행되어야 하고 행사는 직접 주관하며 예산은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계약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부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할 수 있음
- 그런데 위 재단(문화재연구소)은 행사·홍보비로 편성하여야 할 2건의 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고, 재단에서 자체 심의만으로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보조사업 완료

| 사업연도 | 보조사업명               | 사업비(천원) | 예산과목     | 수행단체 |
|------|---------------------|---------|----------|------|
| 합계   | 2개 사업               | 245,050 |          |      |
| 2020 | 제1회 마한 학술경연대회       | 147,150 | 민간경상사업보조 | ○○○○ |
| 2021 | 마한문화유산 답사 및 미술대회 운영 | 97,900  | 민간경상사업보조 | ○○○○ |

- 그로 인하여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할 2개 사업의 행사대행 업종의 입찰참여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 초래

## 2-2 행사 관련 전문가 자문 사례비 집행 부적정

- 위 재단(문화사업팀, 문화예술교육팀)은 '19년부터 '22년까지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사업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나 강사 초빙 사례비를 177건 8,538만 원을 지급
- 「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는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는 행사·홍보비에서 집행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은 법령·조례·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
  - \* 「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 「재단 자문위원회 운영 구성 규정」
  - \*\* 「재단 공모사업 운영규칙」
- 그런데 위 재단(문화사업팀, 문화예술교육팀)은 '19. 12. 30.부터 '22. 3. 4.까지 행사·홍보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35명 1,071만원 전문가 자문회의 사례비가 회의운영비나 심사수당 예산에서 부적정하게 집행
- 그로 인하여 수당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결과 초래

## 3. 도 위탁사업 위·수탁 협약 계약 체결 미이행

- 위 재단(문화사업팀 등 5개팀)은 '19년부터 '22년까지 도 위탁사업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등 122개 사업 640억원의 사업을 수행
-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별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재단 위탁사업 운영규칙」 제3조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탁 받거나 대행하는 경우 위탁기관과 맺은 협약 및 계약서에 의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체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재단(문화사업팀, 문화예술교육팀, 공연예술진흥팀, 문화재연구소장)은 '19년부터 '22년까지 도 위탁사업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122개 사업을 위·수탁 협약, 계약체결 없이 사업을 수행

- 그로 인하여 수탁사업에 경비의 범위, 비용의 부담의 방법 절차, 위탁 수수료 등이 상호 협의를 통한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행정절차가 생략되는 결과 초래

- ☞ 지방보조금 정산과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道(○○과, ○○○과)에 “시정요구” 조치
- ☞ 앞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도 수탁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위·수탁 협약, 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되도록 “주의요구” 조치

## 6 전남도립국악단 수당 지급 부적정

- 위 재단(공연예술진흥팀)은 「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19. 4. 15.부터 '22. 4. 14.까지 도립국악단 및 어린이국악단 공연계획 수립·시행 등 운영 전반을 위탁 관리 중

### 1.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제작 등 사례금 지급 부적정

- 「도립국악단 설치 조례」에 도립국악단원의 보수 산정, 각종 수당 지급 기준 등 보수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단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수당 등을 정하도록 규정
- 또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신설·변경할 경우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재단(공연예술진흥팀)은 「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등에 급여와 공연 수당에 대한 지급규정만 있고, 소속단원이 본연업무 외 창작활동이나 국악단 작품 제작 시 사례금 지급 근거, 금액 등이 미규정되었는데도
  - '20. 3. 26.부터 '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국립국악원 사례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재단 내부결재만으로 단원 및 외부참여자에게 작곡료 등 34개 항목에 대해 총 3억 4,200만원 부적정하게 집행
- ※ 감사기간 중 타 지자체 사례 조사 결과 3개 기관(○○국악원, ○○시립예술단, ○○○도립국악원)은 단원과 소속사업으로 시행되는 사례지급 기준을 별도 규정으로

마련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그로 인하여 사례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문화재단의 국악단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 초래

## 2. 어린이국악단 주말교육 지도 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제25조 등에 어린이국악단원 지도를 위해 도립국악단원 및 객원예술감독이 추천한 전문예술인을 지도교사로 위촉하고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한편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교육훈련비는 직원 교육훈련 과정 경비 및 직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용 등에 지급하고 재단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성 경비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지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재단(공연예술진흥팀)은 지도수당 지급 가능 규정만 두고 세부기준이 없는데도 객원예술감독과 지도교사 등에게 「국립국악원 사례금 지급 규정」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여
  - '19년부터 '21년까지 총 8,400만원 집행하고 그 중 약 6,900만원은 행사운영비가 아닌 교육훈련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 신뢰도 훼손

(단위: 원)

| 구 분     |       | 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       | 83,639,000 | 26,277,000 | 30,210,000 | 27,152,000 |
| 국악단원    | 교육훈련비 | 22,274,480 | 5,094,600  | 9,672,170  | 7,507,710  |
|         | 행사운영비 | 2,656,340  | 2,062,100  | 255,360    | 338,880    |
| 외부지도교사  | 교육훈련비 | 46,670,400 | 12,822,720 | 17,513,760 | 16,333,920 |
|         | 행사운영비 | 4,943,040  | 3,985,440  | 364,800    | 592,800    |
| 기타(원천세) |       | 7,094,740  | 2,312,140  | 2,403,910  | 2,378,690  |

☞ 도립국악단원의 본연업무 외 창작활동이나 국악단 작품 제작시 지급되는 사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 등에 명시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국악단원 지도교사에 대한 지도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제도상 개선요구” 조치

## 7 계약체결내역 미공개 등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위 재단(기획경영팀 등 6개팀)은 '19년부터 '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문화예술회사를 진흥하고 문화예술 창작·보급 활동 등 문화예술진흥사업 등을 위해 총 383회에 걸쳐 약 39억원 상당의 계약 체결

### 1. 전남문화재단 계약 체결 내역 미공개

- 「재단 재무회계관리규정」 제39조제3항에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고, 「지방계약법」 제43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재단(기획경영팀 등 6개 팀)은 '19. 12. 3.부터 '22. 3. 23.까지 계약 체결한 383건에 대해 '22. 3. 25. 감사일 현재 185건, 약 15억원 상당의 계약 내역을 재단 누리집에 미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저하 초래

(단위: 원)

| 회계연도 | 계약건수 | 계약금액(B)       | 미공개 계약건수 | 미공개 계약금액      |
|------|------|---------------|----------|---------------|
| 계    | 383  | 3,901,611,200 | 185      | 1,550,881,770 |
| 2019 | 5    | 29,207,200    | 2        | 10,716,000    |
| 2020 | 151  | 136,8141,700  | 90       | 670,028,620   |
| 2021 | 210  | 2,340,412,300 | 78       | 726,187,150   |
| 2022 | 17   | 163,850,000   | 15       | 143,950,000   |

### 2. 독립국악단 의상제작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14조에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문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재단(공연예술진흥팀 등)은 '20. 3. 27.부터 '21. 12. 21.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수기문서로 16개 업체와 25회에 걸쳐 2억 9,2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체결하여 행정의 투명성 저하 초래

☞ 앞으로 미공개된 계약 내용을 즉시 재단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종 계약 체결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 ① 전남관광○○○○사업 추진 부적정

- 관광재단(경영지원실)은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해 '20년부터 '21년까지 40건, 76억원의 국·도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

#### 1. 전남관광○○○○사업 인력 선발 부적정

##### 1-1. 전남관광○○○○센터 센터장 선발 부적정

- 「전라남도관광재단 인사 규정」 제7조 등에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전까지, 경력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
- 또한 '전남관광○○○○사업 인력 모집선발 공고'에 전남관광○○○○센터 센터장 모집인원은 1명으로 한다고 공고
  - 그런데 관광재단(경영지원실)은 전남관광○○○○센터 센터장 모집인원을 1명으로 공고 한 후에 아무런 변경 공고를 하지 않고 3명의 응시인원 중에서 2명을 센터장으로 위촉

##### 1-2. 전남관광○○○○사업 인력 선발 가산점 적용 부적정

- 「전라남도관광재단 인사규정」 제7조 등에 채용공고는 재단 누리집,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 배수, 가점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규정
- '전남관광○○○○사업 인력 모집선발 공고' 우대사항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주민등록등본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전라남도에 합산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자', '차량운전가능자, 차량 소지자'로 명시
  - 그런데 관광재단(경영지원실)은 가점기준에 해당하는 세부 평가기준을 미리 마련하지 않고 '전남관광○○○○사업 담당 인력 선발 결과 보고' 문서에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이 없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주민등록등본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전라남도에 합산 거주 기간 5년 이상인자'는

가산점을 누락하여 평가

\* '관광○○', '관련 경험', '자격증', '차량'

- 그로 인하여 관련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구직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전남관광○○○○사업 인력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

## 2.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부적정

- 「보조금관리법」 제7조 등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관광재단(경영지원실)은 '20년 전남관광○○○○사업 등 2개 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33일부터 163일까지 위반
- 그로 인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및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기한내 점검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

☞ 전남관광○○○○사업 인력 선발시 공고내용 및 명확하고 투명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선발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 기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조치

## ②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전남관광재단은 '20. 7월부터 '22. 3월까지 86건의 수의계약과 5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 1. 수의계약 및 제안서 평가 내역 미공개

- 「지방계약법」 제9조 제4항 등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경우 수의계약 내역과 평가위원별 제안서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전남관광재단(경영지원실)은 '20. 7월부터 '22. 3월까지 체결한 86건의 수의계약 내역은 공개하지 않다가 감사 기간 중인 '22. 3. 18. 공개하였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5건의 제안서 평가 내역을 미공개

- 그로 인하여 제안서 제출업체가 제안서 평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 2.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 9조 제1항 등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이 불가능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전남관광재단은 2건의 사업에 대해 예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이고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데도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

(단위 : 천원)

| 연번 | 사업명                               | 예정<br>가격 | 계약<br>금액 | 계약일         | 수의계약 사유                          | 계약자  |
|----|-----------------------------------|----------|----------|-------------|----------------------------------|------|
| 1  | 전라남도 대표 공연관광 콘텐츠 기획·제작            | 210,000  | 210,000  | 2021.11.02. | 특수지역에서의 공사·용역으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 |
| 2  | 포스트코로나시대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복합리조트 조성 연구용역 | 48,000   | 48,000   | 2021.06.03.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그로 인하여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취지를 훼손하여 계약의 공정 성과 투명성이 결여되는 결과 초래

☞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조치

## ③ 범죄 경력조회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 전남관광재단은 '20. 7월부터 '22. 3월까지 경영지원팀 ○○○ 차장(○급) 등 총 12명을 신규직원으로 채용
- 「전라남도관광재단 인사관리 규정」 제16조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전남관광재단(경영지원팀)은 범죄경력조회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채용한 12명의 임용결격 사유 여부를 미확인
- 그로 인하여 신규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게 되는 우려를 초래

☞ 신규직원 채용 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대상으로 하여금 경찰청 홈페이지의 범죄경력을 열람하여 범죄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

## VI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서

○ 다음 페이지 참조

# 전라남도 통보

제 목 진흥원 조직운영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행정지원실)

내 용

## 1. 업무 개요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력을 높여 전라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2030 바이오경제의 첨병”을 비전으로 “바이오산업 고도화, 기업경쟁력 강화, 실용적 R&D 강화,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경영 개선”을 경영 목표로 하여 블루 바이오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 1. 센터별 회계업무 수행 등 인력관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조직 및 정원규정」 제4조 및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진흥원의 정원은 총 163명으로 되어 있고, 센터별로 직급별로 배정되어 있으며, 진흥원의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하고, 원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업무 및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재무회계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진흥원이 아닌 센터별로 결산을 하고 이를 취합하여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및 정원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중복 등

을 점검하여 업무 및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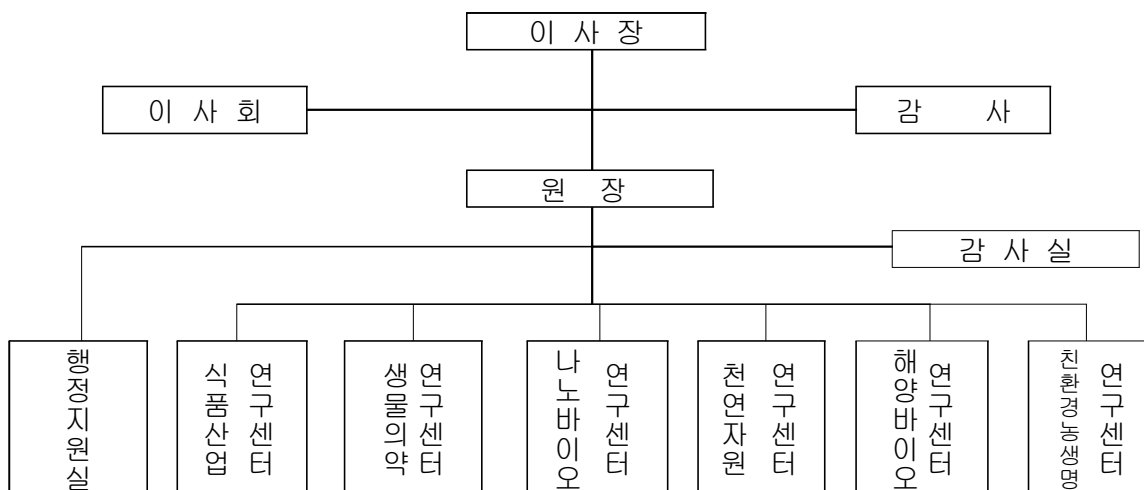
그런데 진흥원(행정지원실)에서는 6개 센터별로 ‘독립채산제<sup>2)</sup>’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진흥원 본청과 센터별로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 본원에서 세무·회계업무 담당직원 1명내지 2명이 일괄 처리할 수 있는데도 세무·회계업무를 센터별로 처리하고 있어 총 11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 등 세무·회계업무 및 정원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진흥원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친환경농생명센터에서는 센터의 경영 약화로 2020년에 가족수당(6월~9월분), 초과근무수당(5월~8월분) 계 14,473,430원을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다가 2020. 10. 7.에서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연구개발사업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야 할 진흥원에 센터별로 세무·회계업무, 계약업무 등 지원업무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어 인력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 2. 정원규정 비효율적 운영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조직 및 정원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진흥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2) 단일기업 또는 공장·사업부 등의 기업 내 경영단위가 자기의 수지(收支)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영관리제도로 산하기관의 재정을 모(母)기관의 재정으로부터 분리하여 경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것도 독립채산제에 속한다. 독립채산제는 ①수지적합의 원칙, ②자본 자기조달의 원칙, ③이익금의 자기처분 원칙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성립된다.

또한 같은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진흥원의 센터별, 직급별 정원은 [표 1] “센터별, 직급별 정원”과 같이 되어 있다.

[표 1] 센터별, 직급별 정원

(단위 : 명)

| 구 분        |            | 합 계 | 원장 | 센터장<br>(가급) | 책임급<br>(나급) | 선임급<br>(다급) | 주임급<br>(라급) | 원급<br>(마급) | 비고 |
|------------|------------|-----|----|-------------|-------------|-------------|-------------|------------|----|
|            |            | 163 | 1  | 7           | 26          | 47          | 57          | 25         |    |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 원 장        | 1   | 1  |             |             |             |             |            |    |
|            | 행정지원실      | 10  |    | 1           | 2           | 3           | 3           | 1          |    |
|            | 식품산업연구센터   | 29  |    | 1           | 4           | 9           | 9           | 6          |    |
|            | 생물의약연구센터   | 34  |    | 1           | 4           | 8           | 12          | 9          |    |
|            | 나노바이오연구센터  | 18  |    | 1           | 3           | 5           | 6           | 3          |    |
|            | 천연자원연구센터   | 34  |    | 1           | 5           | 10          | 17          | 1          |    |
|            | 해양바이오연구센터  | 15  |    | 1           | 3           | 5           | 4           | 2          |    |
|            |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 20  |    | 1           | 4           | 6           | 6           | 3          |    |
|            | 감사실        | 2   |    |             | 1           | 1           |             |            |    |

따라서 센터간에 협업이 필요한 과제발굴 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경영환경, 경영방향, 센터의 사업수주, 재정상황, 인력 배치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원 조정이나 TF팀 구성 등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조직 및 정원규정」에는 직급별 정원만 규정하고, 센터별 정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행정지원실)은 바이오산업 관련 과제발굴 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조직과 인력의 조정이 필요한데도 정원규정이 센터별로 규정되어 있어 이사회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센터간 정원 조정이나 인력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전남 바이오 산업육성 계획이나 국가 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국고 건의사업 등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 3. 경영개선으로 자립화 노력 미흡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정관」 제8조 제7항에 따르면 원장은 임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임기 내 달성목표를 포함한 기관발전계획(경영혁신방안 포함한다)과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흥원은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2021년도 결산안(제20기)」 2. 사업보고서 4. 사업추진실적 재정자립도(14페이지)가 2021년 목표 85%대비 77.5%이고, 2020년 79%에 비해 1.5%p가 감소하였으며, 미수금 명세서에 918백만원의 미수금 잔액이 있고, 미수액은 장비사용료, 임대료, 수수료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진흥원은 R&D사업 수주활동 적극 추진, 장비사용 수익 확대, 분석사업수익 증대, 기술이전 수익 증대 등 경영혁신방안을 포함한 진흥원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은 국책사업,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R&D사업 수주를 위한 전담부서가 없고, 경영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실 기획관리팀 인력은 5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장비사용료, 임대료 등 918백만원의 미수금이 있는데도 압류 등 채납처분을 위한 전담 부서가 없는 등 자립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개선방안 계획 수립 및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진흥원에서는 ○○○ 원장의 임기가 2021. 12. 27. 시작되었으므로 3개월 이내에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진흥원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진흥원이 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력을 높여 전라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관계기관 의견**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 ① 세무·회계업무 등 지원업무는 진흥원 본원에서 일괄 처리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및 정원 조정방안을 강구하고,
- ② 국책사업, 대형 R&D사업의 수주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경영혁신방안을 포함한 진흥원 발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전라남도 권고

제 목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이관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행정지원실,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내 용

## 1. 업무 개요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는 2021. 9. 1. 연구개발사업 중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국 농약잔류 허용기준(IT) 과제 수행” 등 [표 1] “연구기관이 변경(이관)된 연구개발사업”과 같이 3개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 연구수행기관을 진흥원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에서 (주)○○으로 변경(이관)하였다.

[표 1] 연구수행기관이 변경(이관)된 연구개발사업

(단위 : 백만 원)

| 센터명            | 사업명<br>(발주기관)                                               | 수탁사업비           | 사업기간                        | 비고                     |
|----------------|-------------------------------------------------------------|-----------------|-----------------------------|------------------------|
| 친환경농생명<br>연구센터 |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국 농약잔류<br>허용기준(IT) 과제 수행<br>(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 180<br>(국비 180) | 2021.1.1. ~<br>2021.12.31.  | 수행기관 변경<br>[진흥원→(주)○○] |
|                | 축산물 중 국내 기준 미설정 농약 안전관리를<br>위한 정량시험법 확립<br>(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110<br>(국비 110) | 2021.1. 1. ~<br>2021.11.30. |                        |
|                | 왕우렁이 농업적 활용을 위한 생태계<br>안전관리기술개발<br>(농촌진흥청)                  | 240<br>(국비 240) | 2021.1.1. ~<br>2023.12.31.  |                        |

※ 자료 :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진흥원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연구개발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는 원장의 승인을 받

아 연구사업으로 선정된 후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부서에 그 내용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험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에 따라 재단의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협약의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사유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행정지원실,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은 위탁자와 계약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의 사망, 이직 등의 사유로 연구수행기관 등의 변경을 검토할 때 특정 연구책임자 없이는 연구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수행기관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진흥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에서(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는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 ◆◆◆가 2021. 8. 31. 진흥원과 채용계약기간이 종료되자 ◆◆◆가 연구책임자로 계약하여 추진 중인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국 농약잔류 허용기준(IT) 과제 수행” 등 [표] “연구기관이 변경된 연구개발사업”과 같이 3건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센터장 ◆◆◆가 새로이 근무하게 될 (주)○○○<sup>3)</sup>으로 연구수행기관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 3건의 연구개발사업은 위탁자인 농촌진흥청과 식약처 식품의약품

3) (주)○○○ : 전남 ○○○군 ○○○면 ○○○산단에 소재한 법인사업자로 비료·사료 제조업, 친환경자재 도·소매, 연구용 역 서비스업을 하는 업체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

안전평가원의 계약서상 계약자는 개인이 아닌 진흥원(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이고, 연구수행기관의 해산, 통폐합 등 연구수행기관에서 연구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농촌진흥청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지도 않았고, 책임연구원을 변경하여 충분히 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한데도 단지 계약기간이 종료된 센터장인 ◆◆◆가 이직할 소속기관으로 변경 요구하였다는 사유로 진흥원에서 연구수행기관을 변경 요구하였다.

이는 연구수행기관을 변경할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센터장인 ◆◆◆ 본인이 결재(검토)하여 최종 원장 결재를 받아 사업을 이관한 것이다.

[표 2] 연구개발사업 이관 현황

(단위 : 명, 천 원)

| 사업명                                                  | 참여연구원                 | 이관 사업비  | 비고 |
|------------------------------------------------------|-----------------------|---------|----|
| 계                                                    | 27<br>(연구원 20, 기간제 7) | 188,598 |    |
|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국 농약잔류 허용기준(IT) 과제 수행(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 연구원 7<br>기간제 3        | 110,019 |    |
| 축산물 중 국내 기준 미설정 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정량시험법 확립(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연구원 5<br>기간제 2        | 36,206  |    |
| 왕우렁이 농업적 활용을 위한 생태계 안전관리기술개발(농촌진흥청)                  | 연구원 8<br>기간제 2        | 42,373  |    |

※ 자료 :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국 농약잔류 허용기준(IT) 과제 수행”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했던 기간제 근로자 ○○○ 등 3명의 채용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사업인 “농약직원등록시험(작물 잔류성) 및 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설정” 사업으로 수행과제를 변경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 잉여 인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 2] “연구개발사업 이관 현황”과 같이 위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원 27명을 투입하여 이룬 연구 실적과 연구비 잔액 188백만 원을 이관하게 되는 등 진흥원의 행정·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위탁자와 계약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수행기관을 변경할 때에는 재단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변경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전라남도

## 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음주운전 징계 등 인사 및 복무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훈 계 대 상 자 ①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  
②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  
③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  
④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  
⑤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  
⑥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  
⑦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  
⑧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

내 용

### 1. 업무 개요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6장 징계 및 포상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직원복무규정」(이하 “직원복무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투표나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고 있다.

### 2. 소속 임직원 음주운전 여부 미확인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진흥원 「인사규정」 제28조 제1호에 따르면 직원이 각종 규정과 내규를 위반하였을 때나 직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의 경우에는 센터장은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원장은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

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4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실적 등을 참작하여 [별표 3-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별표 3-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유형별로 파면에서 견책까지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44호의3 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17. 12. 27.) III. 직원의 인사 [6] 징계 규정을 신설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임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자진신고 하도록 하거나 운전경력증명서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감사실)은 감사기간인 2019년 1월부터 감사일인 2022. 3. 25. 현재까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여 징계의결 요구한 실적이 없고,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은 알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 수 없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한편, 감사기간 중에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진흥원 「인사규정」 제34조 [별표 3-2]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하여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추진하였고, [표] “음주운전 여부 확인 현황”과 같이 운전경력증명서를 63명이 제출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116명은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거부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음주운전 여부 확인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계   | 운전경력증명서 |     | 음주운전 확인 | 비고 |
|------------|-----|---------|-----|---------|----|
|            |     | 제출      | 거부  |         |    |
| 계          | 179 | 63      | 116 | 0       |    |
| 진흥원 본원     | 14  | 14      | -   | 0       |    |
| 식품산업연구센터   | 29  | -       | 29  | 0       |    |
| 생물의약연구센터   | 41  | -       | 41  | 0       |    |
| 나노바이오연구센터  | 18  | 17      | 1   | 0       |    |
| 천연자원연구센터   | 36  | -       | 36  | 0       |    |
| 해양바이오연구센터  | 18  | 13      | 5   | 0       |    |
|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 23  | 19      | 4   | 0       |    |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 등에 대한 수사사실은 수사기관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는 반면, 진흥원 임직원의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수사사실은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수사기관이 통보하지 않고 있고, 진흥원에서도 「인사규정」에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하지 않고 있어 임직원이 음주운전 관련 수사를 받고도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규정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건강검진 공가 허가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진흥원 「직원복무규정」 제14조 제4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인사규정」 제34조 [별표 3] 징계양정 기준 등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근무)을 이탈할 경우 징계하거나, 같은 규정 제54조에 따르면 당연퇴직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소속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를 신청할 때 이를 허가하

였다면, 사후관리를 통하여 공가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복무를 관리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식품산업연구센터 등)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지원팀에 근무하는 ○○○ 등 총 8명이 11회에 걸쳐 [별표] “건강검진 관련 공가 부당 사용 명세”와 같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 신청을 한 후,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용무를 처리하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임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 ①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규정대로 운영하고, (시정)
- ②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 신청을 한 후,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용무를 처리하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 9명을 훈계하고, (훈계)
- ③ 앞으로 임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 표] 생      략

#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장비사용료 할인기준 적용 및 징수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내 용

## 1. 업무 개요

(재)전라남도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기업의 고부가 생물산업 제품개발 및 시제품 생산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장비 등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도내 투자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감사일인 2022. 3. 25. 현재까지 장비사용료<sup>4)</sup>를 [표] “장비사용료 할인 현황”과 같이 381건, 248백만 원을 할인하였다.

[표] 장비사용료 할인 현황

(단위 : 천 원)

| 기관         | 건   | 부과액       | 할인액     | 할인대상       |
|------------|-----|-----------|---------|------------|
| 계          | 381 | 1,640,917 | 248,307 |            |
|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 11  | 7,617     | 1,897   | 졸업기업 등     |
| 천연자원연구센터   | 30  | 79,947    | 19,956  | 입주기업 등     |
| 생물의약연구센터   | 7   | 1,494,794 | 213,269 | 업무협약체결기업 등 |
| 해양바이오연구센터  | 333 | 58,559    | 13,185  | 도내기업 등     |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 1. 장비사용료 할인 산정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 사용규정」 제4장 장비사용 및 관리 제21조에 따르면 장비사용료는 별표 3의 장비사용료 산출기준에 따

4) 장비사용료 = (이용단가×사용량)+직접비+간접비

라 각 센터장이 정하고, 할인율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별표 1] “장비사용료 산정 및 할인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장비의 이용단가와 사용량을 산정하고, 시설·장비 유지 등에 필요한 직·간접비를 고려하여 개별 시설·장비에 대한 적정 사용료를 산정·부과해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은 장비 할인율 적용을 실소요경비에 해당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이용단가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하는데도 전체 사용료를 대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11건, 2,005천 원의 장비사용료가 누락되는 등 [별표 2] “장비사용료 할인 산정 오류 명세”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감사일인 2022. 3. 25. 현재까지 시설·장비의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할인율 적용을 잘못 하였다.

그로 인하여 진흥원은 시설·장비 사용료 산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장비사용료 부과를 누락하여 건전한 재정확충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진흥원의 목표를 저해 하였다.

## 2. 장비사용료 징수관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 사용규정」 제21조의2에 따르면 센터장은 사용자가 장비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1조의3에 따르면 센터장은 사용자가 장비사용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등 법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비사용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장비사용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은 [별표 3] “장기연체한 장비사용료 미조치 명세”과 같이 2021. 12. 31. 현재 장비사용료가 22건 287백만 원 체납되어 있으나, 2019. 1. 1. 부터 20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차량 등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그로 인하여 진흥원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비사용료 45,893천 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고, 2021년 재정자립도 목표 85% 대비 77.5%로, 2020년 79% 대비 1.5%p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장비사용료 할인기준을 숙지하여 부과 누락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비사용료 체납 시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 표] 생 략

#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예정가격 검토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내 용

## 1. 업무 개요

(재)전라남도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계약은 재단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과 일반경쟁계약에 따라 체결함을 원칙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1.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진흥원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잇바디 돌김을 고부가가치 특산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표]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과 같이 잇바디 돌김 추출물의 구강케어 치유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다.

[표]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 용역명                                 | 용역기간                            | 계약금액<br>(천 원) | 계약<br>상대자      | 1차                              |            | 2차                              |            | 재공고사유<br>(긴급입찰<br>사유)  |
|-------------------------------------|---------------------------------|---------------|----------------|---------------------------------|------------|---------------------------------|------------|------------------------|
|                                     |                                 |               |                | 공고일                             | 참가<br>업체 수 | 공고일                             | 참가<br>업체 수 |                        |
| 잇바디 돌김<br>추출물의 구강<br>치유에 대한<br>임상시험 | 2019.10.29.<br>~<br>2020.10.28. | 50,000        | ○○대학교<br>산학협력단 | 2019.09.24.<br>~<br>2019.10.04. | 1          | 2019.10.11.<br>~<br>2019.10.21. | 1          | 입찰<br>참가업체 수<br>미달로 유찰 |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시에 입찰공고문에 사업 내용·기간·예산액·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해야 하고, 제안요청서에는 과업내용·요구사항·계약조건·제안서에 대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7인 이상 10인 이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재공고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공고했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상기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며 2차에 걸쳐 입찰참가 업체수자 없이 유찰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되었다면 당초 공고했던 방법대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평가를 진행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식품산업연구센터 등)은 상기 용역계약이 유찰이 되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당초에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sup>5)</sup>을 적용한 평가와 협상과정을 실시하지 않고, 계약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데도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진흥원은 임상시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 체결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에는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2020. 10. 15. 계약을 타절하였다.

그로 인하여 진흥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를 소홀한 결과 행정력을 낭비하였고,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

5) 기술능력평가(정량 20%, 정성 6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을 위한 사업추진 기회를 일실했다.

## 2.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 검토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와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 방식으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한 후 결정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견적가격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생물의약연구센터 등)에서는 [별표] “용역 분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ScaA 기반 찌찌가무시병 백신 개발 비임상 시험용역 등 35건의 용역분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거래실

레가격 등을 반영한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여 가격협상에 임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에 낙찰률도 적용하지 않은 채, 견적가격 100%를 그대로 최종 계약금액으로 결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거래실레가격 등과 비교하여 적정 낙찰률을 적용하고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검토과정을 소홀히 하여 2019년 1월부터 감사일인 2022. 3. 25. 현재까지 66백만 원의 예산 절감 기회를 일실했다.

**관계기관 의견**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 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 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방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법하게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 ②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거래실레가격 등을 예정가격으로 검토 후 적정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 표] 생 략

#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행정지원실, 생물약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내 용

## 1. 업무 개요

(재)전라남도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재산관리규정」(이하 “재산관리규정”이라 한다)등에 따라 재산(물품)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진흥원 「재산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업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를 신속·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물품의 수급계획을 수립 및 재물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5조 및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등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불용품 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물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재물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재물조사 후 해당부서에서 없어진 물품에 대해 경위서 징구, 사실 조사 등 객관적인 확인 및 보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했다.

또한 진흥원은 불용 대상물품이 발생하면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센터장 등이 일괄적으로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고, 물품의 상태확인을 통해 매각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매각절차를 우선으로 진행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행정지원실 등)은 재단 설립 후 20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재물조사를 추진하지 않아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에서 없어진 물품이나 노후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불용결정,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등을 이행하지 않고 창고 등에 방치하여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물품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2. 3. 21.부터 3. 25.까지 감사기간 동안 추진한 물품의 표본조사 결과 [별표] “PC(노트북, 데스크탑) 재물조사 결과 명세”와 같이 83대의 PC(노트북, 데스크탑)가 사용할 수 없으나 불용결정 없이 창고 등에 방치되고 있거나 물품의 소재가 불명확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21. 12. 31. 기준 기관의 결산서에 PC 83대, 252백만 원의 유형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기관의 자산이 과대평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진흥원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무단점유나 훼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자산을 실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기관의 목적 달성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효율적 자산운영을 저해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효과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재물조사를 통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공정한 폐기절차를 이행하여 자산이 과대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 표] 생      략

#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복리후생비 지원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내 용

## 1. 장기근속자(10년) 포상품 지급 및 직원 상해보험가입 부적정

### 가. 업무개요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2013년 장기근속자 포상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이상 장기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 1] “장기근속자 포상품 지원 현황”과 같이 총 46명에게 순금카드(3.75g) 포상을 추진하였다.

[표 1] 장기근속자 포상품 지원 현황

(단위 : 원)

| 연도별  | 성명(인원)    | 재직기간       | 포상품               | 사업비        |
|------|-----------|------------|-------------------|------------|
| 계    | 46명       | 10년 이상     | 순금카드              | 14,465,000 |
| 2019 | ○○○ 등 11명 | 2008년 ~ 현재 | 순금카드<br>(295천원/개) | 3,245,000  |
| 2020 | ○○○ 등 24명 | 2010년 ~ 현재 | 순금카드<br>(330천원/개) | 7,920,000  |
| 2021 | ○○○ 등 11명 | 2011년 ~ 현재 | 순금카드<br>(300천원/개) | 3,300,000  |

자료 : 진흥원 장기근속 포상자 명단 재구성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행정지원실 등 6개 센터에서는 업무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보상과 상해관리를 목적으로 [표 2] “직원단체 상해보험 가입 현황”과 같이 위촉직을 포함한 3년간 총 471명을 대상으로 43,261천원의 상해보험 가입금액을 지원하였다.

[표 2] 직원단체 상해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명, 원)

| 연도별  | 부서명           | 인원  | 금액         | 보험회사 | 주요 보장내용              |
|------|---------------|-----|------------|------|----------------------|
| 계    | 6개 센터         | 471 | 43,260,680 |      |                      |
| 2019 | 행정지원실 등 6개 센터 | 166 | 15,763,760 | ○○○  | 상해사망·후유장애,<br>실손보장 등 |
| 2020 | 행정지원실 등 6개 센터 | 156 | 14,589,010 | ○○○  | 상해사망·후유장애,<br>실손보장 등 |
| 2021 | 행정지원실 등 6개 센터 | 149 | 12,907,910 | ○○○  | 상해사망·후유장애,<br>실손보장 등 |

자료 : 진흥원 직원단체 상해보험 가입내역 재구성(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미가입)

## 나.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민권위위원회 권고로 신설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르면 소속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집행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7조 제2호 나목에 복리후생비는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외부감사의 감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폐지·축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 및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맞춰 10년이상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원단체 상해보험은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개인별 보장내용을 선택·가입하고 개인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은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지원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이상 장기근속한 임직원 2019년 11명, 2020년 24명, 2021년 11명 등 3년 동안 총 46명에 대한 14,46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3.75g의 순금카드를 제작하여 포상품으로 집행하였다.

그리고 진흥원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직원단체보험 가입을 개인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여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중복하여 별도로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2019년 166명, 2020년 156명, 2021년 149명 등 3년간 총 471명에 대한 43,261천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규정에도 없는 직원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등 과도하게 직원 후생복지 예산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진흥원은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피복비 지원 부적정

### 가. 업무개요

진흥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행정지원실 등 7개 센터에서 임직원과 위촉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를 [별표] “일상근무복 및 실험·작업복 지원 현황” 같이 총 648명을 대상으로 56,222천원의 피복비를 지원하였다.

### 나.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7년 12월 8일 체결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간의 단체협약서」 제9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복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산부서(실험실 포함) 근무자에게는 매년 1회, 기타부서 근무자에게는 2년에 1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 및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간의 단체협약서」에 따라 생산부서(실험실 포함) 근무자에게 작업복과 실험실 가운 및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근무

자에게만 피복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진흥원 내 각 연구센터 전 직원이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은 피복비 지원의 경우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생산부서(실험실 포함) 근무자를 위한 작업복과 실험실 가운만 지급이 가능한데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부서(실험실 포함) 근무자를 위한 작업복과 실험실 가운 지급 외에도 2019년 150명, 2020년 101명, 2021년 93명 등 3년간 총 344명에게 일상근무복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41,935천원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진흥원 내의 각 연구센터들은 독립채산제 운영에 따라 피복비를 지원해야 할 생산부서 근무자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피복비를 지원하지 않아 할 행정지원부서는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복리후생비를 중복 또는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 표] 생 략

# 전라남도 통보

제 목 연구과제 시험연구비 등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내 용

## 1. 업무개요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개발, 성능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별표] “2019~2021년 시험연구비·일반재료비 예산액 및 예상절감액”과 같이 3년간 6,190백만 원의 예산액으로 시험연구비 등 소모품 구입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르면 물품·용역의 소액수의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재무회계규정」 제39조에 따르면 계약은 재단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하고,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계약에 따라 체결하게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5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입찰을 통해 구입하여야 하나, 사업별로 소모품의 계약 예정가격이 수의계약 대상이라면 연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해당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통해 시약 및 초자류 등의 소모품을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의 6개 센터에서는 소모품 구입비로 2019년 1,891백만원, 2020년 2,021백만원, 2021년 2,278백만원 등 3년간 총 6,190백만원의 예산으로 시약 및 초자류 등 소모품을 구입할 때 단가계약을 통하여 구입할 경우 예정가격의 88%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별표] “2019~2021년 시험연구비·일반재료비 예산액 및 예상절감액”과 같이 3년간 742,760천 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도 소모품을 필요로 하는 시기 때마다 계약당사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학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에서는 구입할 소모품 명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완료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절감은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센터는 이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진흥원은 소모품을 구입할 때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위 사업별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으로써 연간 2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연초에 연간 시험연구비 등 소모품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단가계약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 표] 생 략

# 전라남도

## 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입주기업 입주자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품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훈 계 대 상 자 ①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급 ○○○  
②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급 ○○○

내 용

###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9년 1월부터 20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산업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6개 센터에서 기업이 입주 가능한 사무실 및 공장 100여개소를 운영하면서, 152개 입주기업에 임대료 5,818백만원을 부과하고, 5,683백만원을 징수<sup>1)</sup>(징수율 97.6%)하였다.

○급 ○○○는 2019. 1. 1.부터 현재까지 천연자연연구센터에서 입주기업 입주대상 선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급 ○○○는 2017. 8. 1부터 현재까지 천연자연연구센터에서 입주기업 입주대상 선정 업무 담당자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 2. 입주기업 입주대상 선정 부적정

1) 식품산업연구센터(34개 기업, 부과 2,098백만원, 징수 2,068백만원), 생물의약품연구센터(21개 기업, 부과 1,092백만원, 징수 1,070백만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30개 기업, 부과 1,805백만원, 징수 1,763백만원), 천연자원연구센터(36개 기업, 부과 253백만원, 징수 237백만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14개 기업, 부과 99백만원, 징수 98백만원),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17개 기업, 부과 471백만원, 징수 447백만원)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 사용규정」(이하 “입주기업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면 입주대상은 바이오산업 관련 업체,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신규창업 예정자, 장비운영 및 인프라 지원업체, 바이오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그 밖에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가 입주 할 수 있고, 새로 창업한 경우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입주대상기업이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야 하고, 심의위원별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출석한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심의 위원별 평균 70점 획득한 입주대상기업을 결정하여야 하고,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신규창업 예정자가 입주하는 경우에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천연자원연구센터)은 2022. 3. 25. 감사일 현재 [표] “신규창업 예정자 사업자 등록 미 이행 등 부적정 현황”과 같이 서양국 등 3명의 신규창업 예정자가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시점에 적게는 52일 많게는 2,973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신규창업 예정자 ○○○의 경우 2013. 8. 1. 입주하여 8년 8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진흥원으로부터 6회 입주연장을 승인받아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여 신규 창업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천연자원연구센터는 신규창업 예정자 ○○○의 경우 심의위원별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입주 가능한데도 평균 57점을 획득하여 13점이 부족한 입주신청자를 입주대상으로 결정하였다.

[표] 신규창업 예정자 사업자 등록 미 이행 등 부적정 현황

| 연번 | 입주기업<br>(신규창업 예정자) | 입 주 일       | 사업자등록<br>여·부 | 사업자등록 경과 일수<br>(입주 후 6개월 이내) |           | 평가결과<br>평균 | 비 고             |
|----|--------------------|-------------|--------------|------------------------------|-----------|------------|-----------------|
|    |                    |             |              | 기 준 일                        | 경과일수      |            |                 |
| 계  | 3명                 |             | 부 3          |                              |           |            |                 |
| 1  | ○○○                | 2019.05.07. | 부            | 2019.11.07.                  | 184일 경과   | 71         | 퇴거(2020.04.30.) |
| 2  | ○○○                | 2021.08.01. | 부            | 2022.01.01.                  | 52일 경과    | <b>57</b>  | 입 주 중           |
| 3  | ○○○                | 2013.08.01. | 부            | 2014.02.01.                  | 2,973일 경과 | 71         | 퇴거(2021.06.30.) |

자료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입주기업 관리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입주를 하고자하는 다른 신규창업 예정자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3. 입주기업 입주연장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입주기업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입주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센터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신청을 접수한 경우 입주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센터장은 입주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 졸업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입주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접수된 입주신청서를 입주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알려야 하고, 졸업신청서를 제출한 입주자에 대하여도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을 결정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천연자원연구센터 등 2개 센터)은 2022. 3. 25. 감사일 현재 [별표 1] “입주기업 입주연장 부적정 현황”과 같이 22개 업체가 적게는 7일에서 많게는 30일 늦게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아무런 제재없이 접수 받아 입주기간을 연장하였고, 특히 식품산업연구센터 등 2개 센터에서는 미래식량정원(주) 등 3개 업체의 경우 입주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입주연장 신청하도록 하여 연장 처리 하였다.

또한 나노바이오연구센터 등 4개 센터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적게는 3일에서 많게는 51일이 지나 입주자에게 연장 여부를 통보하는 등 입주기업 입주연장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고, 입주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에서는 입주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입주하고자 하는 신규 기업과 기존의 입주기업과의 입주기회 제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4. 입주기업 임대료 등 연체자 관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입주기업 관리규정」 제17조의2에 따르면 센터장은 입주자가 임대료, 시설관리비, 공과금(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납입을 독촉하여야 하고,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입주계약 해지와 이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체자에게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등 법적 조치와 진흥원이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입주기업이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납입을 독촉하고,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입주계약 해지, 강제퇴거 조치, 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식품산업연구센터 등 4개 센터)은 2019. 1. 1.부터 20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2] “임대료 등 연체자 부적정 관리 현황”과 같이 6개월 이상 연체한 18개 업체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로 12건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자진 퇴거하도록 내버려 뒀다. 더욱 징수가 어려워진 상태이다.

그 결과 진흥원은 감사일인 2022. 3. 25. 현재 68,764천원의 체납이 되어 있어 2021년 재정자립도는 전년 79% 대비 77.5%로 1.5p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 ① 입주기업 선정 시 획득한 점수가 부족한데도 대상자로 선정하고, 신규창업 예정자의 사업자 등록 요구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 담당 팀장 장충호와 업무 담당자 김광수를 훈계하고(훈계)
- ② 「입주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창업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고, 입주기업 임대료 등 6개월 이상 연체한 18개 업체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을 조치하시기 바라며,(시정)
- ③ 앞으로 「입주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입주기간 연장 신청 및 결정·통보기한을 준수하도록 입주기업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공사 품질시험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천연자원연구센터)

내 용

##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9년 1월부터 20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산업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표] “건축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였다.

[표] 건축공사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        |       | 사업기간                            | 도 급 사<br>(대표이사) | 비고 |
|----------------------------------------|-------------------|--------|--------|-------|---------------------------------|-----------------|----|
|                                        |                   | 계      | 도금액    | 관급자재  |                                 |                 |    |
| 계                                      | 3건                | 13,567 | 10,572 | 2,995 |                                 |                 |    |
| 천연물 원재료 GAP/GMP<br>연계처리 시스템 구축사업       | 건축면적<br>1,981.96㎡ | 2,921  | 2,420  | 501   | 2020.04.06.<br>~<br>2020.01.27. | ○○건설<br>(○○○)   |    |
| 국제규격 천연물 의약품<br>원료 대량 생산시설<br>구축사업     | 건축면적<br>4,357.99㎡ | 8,075  | 6,409  | 1,666 | 2020.04.17.<br>~<br>2020.07.17. | ○○공사주<br>(○○○)  |    |
|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추출<br>및 표준화 기반<br>구축사업 건축공사 | 건축면적<br>3,393.25㎡ | 2,571  | 1,743  | 828   | 2021.04.01.<br>~<br>2022.03.28  | ○○건설<br>(○○○)   |    |

자료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 2. 품질시험계획 업무처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배치할 경우에는 기본교육 35시간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승인 통보하고, 기본 및 전문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배치하고 건축공사를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천연자원연구센터)은 2022. 3. 25. 감사일 현재 3개 사업장에서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대하여 검토·승인하지 않고, 배치한 기술자도 기본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자로 배치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품질관리자 교육 미 이수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안전관리계획 업무처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sup>1)</sup>으로 정하는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2조 제2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향타·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천연자원연구센터)은 2022. 3. 25. 감사일 현재 향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3개 사업장에서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승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아 공사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가져왔다.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향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관계기관 의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에서 제출한 품질시험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검사 미 실시 및 하자보수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내 용

##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9년 1월부터 20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산업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표 1]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현황”과 같이 132억 5천 1백만원을 투입하여 23건의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표]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 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
| 건수 | 사업비    | 건수    | 사업비 | 건수    | 사업비 | 건수    | 사업비    |
| 23 | 13,251 | 1     | 19  | 8     | 512 | 14    | 12,720 |

자료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

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공사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식품산업연구센터 등 3개 센터)은 20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미실시 현황”과 같이 하자검사 대상 23건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53회 실시하여야 하는데 27회만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하자발생 시 적기에 보수를 하지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사의 경우 별도의 예산으로 보수를 하여야 하므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공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 표] 생 략

# 전라남도

## 시정·주의요구

제 목 국내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담 수령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문화재단(문화재연구소)

내 용

###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은 2021. 1월부터 20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문화재연구소 소속 직원이 문화재 학술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국내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다.

### 2. 국내여비 부담 수령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여비규정」(이하 “문화재단 여비 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문화재단의 여비 지급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단 여비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재단 여비 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며, 일비는 1일당 2만원을, 숙박비는 1박당 실비(상한액 : 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로 지급하고 식비는 1일당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여행자는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규

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II.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편에 따르면 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정산 기간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출장 시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어 현금을 사용하였으나 버스승차권이나 운임 영수증 등이 발급되지 않아 운임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없는 경우, 출장지에서의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되,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3. 3월 공무원 여비업무 Q&A 자료집(안전행정부, 현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운임은 실비 지급이 원칙이므로 승차권 등 증빙자료가 없으면 지급할 수 없으며, 만일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행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할 수 없는 사유를 출장자가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에 따라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소속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한 후에 운임 등을 갖추어 청구하여 출장비를 지급받도록 하여야 하고, 승차권이나 운임 영수증 등이 발급되지 않아 운임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출장지에서의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

거서류를 제출하여 국내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문화재단(문화재연구소)은 2021. 1월부터 20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문화재연구소 소장 ○○○ 등 11명의 소속 직원이 문화재 학술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을 신청한 이후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운임 영수증 등 출장에 대한 증거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표 1] “출장여비 부담 수령 현황”과 같이 총 289일에 대하여 국내여비 14,380,02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표 1] 출장여비 부담 수령 현황(2021.1월~2022.3.25.)

(단위 : 일, 원)

| 성명  | 총   |            | 2021년 |            | 2022년 |           |
|-----|-----|------------|-------|------------|-------|-----------|
|     | 일수  | 금액         | 일수    | 금액         | 일수    | 금액        |
| 11명 | 289 | 14,380,020 | 243   | 12,101,440 | 46    | 2,278,580 |
| ○○○ | 26  | 1,289,020  | 20    | 989,240    | 6     | 299,780   |
| ○○○ | 66  | 3,344,040  | 59    | 2,987,040  | 7     | 357,000   |
| ○○○ | 11  | 521,260    | 7     | 329,700    | 4     | 191,560   |
| ○○○ | 12  | 569,150    | 7     | 329,700    | 5     | 239,450   |
| ○○○ | 21  | 992,260    | 17    | 800,700    | 4     | 191,560   |
| ○○○ | 65  | 3,294,820  | 60    | 3,039,820  | 5     | 255,000   |
| ○○○ | 11  | 521,260    | 7     | 329,700    | 4     | 191,560   |
| ○○○ | 51  | 2,578,600  | 47    | 2,374,600  | 4     | 204,000   |
| ○○○ | 17  | 788,790    | 14    | 645,120    | 3     | 143,670   |
| ○○○ | 2   | 105,140    | 2     | 105,140    | -     | -         |
| ○○○ | 7   | 375,680    | 3     | 170,680    | 4     | 205,000   |

자료 : 전라남도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이번 종합감사 기간(2022. 3. 21.~2022. 3. 25.) 중에 2021. 1월부터 2022. 3. 35. 감사일 현재까지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운임 영수증 등 출장 증거서류를 갖추지 않고 지급받은 국내여비 391일, 19,383,760원에 대하여 출장 증거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한 결과, [별표] “출장 증거서류 제출 명세”와 같이 ○○○ 등 11명이 102일, 5,003,740원에 대하여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출장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89일, 14,380,020원에 대하여는 출장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국내여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목적외로 사용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3. 현지출장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복무 규정」(이하 “문화재단 복무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무시간은 1주당 40시간으로 하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단 복무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사무처장은 사무처리 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직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주 12시간, 월 3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6. 7월 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 현장 출장 시 시간외근무 운영계획(안)을 수립<sup>1)</sup>하여 2016. 7월부터 20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학술조사 현장에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내부결재를 받고, 시간외근무 대상자는 근태현황 및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관리 책임자는 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단의 시간외근무 근태현황 및 근무내역 결과를 복무점검자인 문화재연구소 소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문화재연구소 소속 직원이 학술조사 현장 출장지에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출장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제출된 출장일에 현장 출장지에서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근태현황 및 근무내역을 결재를 하여야 하고 시간외근무 대상자는 그 결과를 제출받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재단-1842(2016. 7.) 「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 현장 출장시 초과근무 운영계획(안)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문화재단(문화재연구소)은 2021. 1월부터 20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 등 5명이 현장출장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현장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현장출장 시간외근무 근태현황 및 근무내역을 문화재연구소 소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 [표 2] “현장출장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현황”과 같이 6일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35시간 855,17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표 2] 현장출장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현황(2021.1월~2022.3.25.)

(단위 : 시간, 원)

| 근무일         | 총  |         |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간 | 금액      | 시간  | 금액      | 시간  | 금액      | 시간  | 금액      | 시간  | 금액      |
| 6일          | 35 | 855,170 | 3   | 111,240 | 14  | 413,190 | 12  | 212,320 | 6   | 118,420 |
| 2021.05.11. | 6  | 141,620 | -   | -       | 3   | 88,540  | 3   | 53,080  | -   | -       |
| 2021.05.13. | 9  | 200,830 | -   | -       | 3   | 88,540  | 3   | 53,080  | 3   | 59,210  |
| 2021.05.17. | 6  | 147,750 | -   | -       | 3   | 88,540  | -   | -       | 3   | 59,210  |
| 2011.05.20. | 3  | 111,240 | 3   | 111,240 | -   | -       | -   | -       | -   | -       |
| 2021.11.25. | 5  | 112,110 | -   | -       | 2   | 59,030  | 3   | 53,080  | -   | -       |
| 2021.12.02. | 6  | 141,620 | -   | -       | 3   | 88,540  | 3   | 53,080  | -   | -       |

자료 : 전라남도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목적외로 사용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문화재단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문화재 조사 출장시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장출장 시간외근무시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으며 업무 특성에 맞는 복무 관리를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국내여비 14,380,020원과 현장출장 시간외근무수당 855,170원 등 총 15,235,190원을 회수하고(시정)
- ② 앞으로 국내여비를 청구할 시에는 운임영수증 등 출장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현장 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주의)

# 전라남도

## 훈계·개선요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남문화재단(기획경영팀)

훈 계 대 상 자 전남문화재단 기획경영팀 ○○팀장 ○○○

내 용

### 1. 업무개요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중이며, 2020.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소속 직원 7명을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켰다.

### 2.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근무평정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은 역량과 업적평정 실시 후 종합하되, 업적평정은 부서 및 개인의 업무계획 및 실적을, 역량평정은 직위·직급별 또는 직무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업적평정은 개인과 부서의 성과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총점을 100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부서 및 개인별 업적평가 반영비율에 별표 2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1차·2차·3차 평정자간 평정점수 비중치는 별표 3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역량평정은 공통역량에 대한

평가는 모든 평정대상자에게 적용하고, 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는 부서장 이상, 직무역량에 대한 평가는 재단의 직무특성에 따른 별표 7의 직무군별 구분표에 따라 평가한 후 각 역량별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를 합한 후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며, 1차·2차·3차 평정자간 평정점수 비중치는 별표 3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고 되어 있다.

[ 표 1 ] 근무성적평정 체계 현황

| 팀장 | 역량평정(30점)            |                      | 업적평정(70점)   |                   |                |    | 가·감점                 |            |
|----|----------------------|----------------------|-------------|-------------------|----------------|----|----------------------|------------|
|    | 1차<br>(사무처장,<br>70%) | 2차<br>(대표이사,<br>30%) | 부서별 평가      |                   |                |    | 가점                   | 감점         |
|    |                      |                      | 공통<br>(40%) | 부서별(60%)          |                | 가점 |                      |            |
|    |                      |                      |             | 부서지표<br>설정평가(40점) | 목표달성도<br>(60점) |    | 부서표창<br>전년평가<br>신규사업 | 포상<br>신규사업 |

| 팀원 | 역량평정(30점)          |                      | 업적평정(70점)          |                      |             |                       |                    | 가·감점                 |            |
|----|--------------------|----------------------|--------------------|----------------------|-------------|-----------------------|--------------------|----------------------|------------|
|    | 1차<br>(팀장,<br>50%) | 2차<br>(사무처장,<br>50%) | 개인별 평가(40점)        |                      | 부서별 평가(30점) |                       |                    | 가점                   | 감점         |
|    |                    |                      | 1차<br>(팀장,<br>50%) | 2차<br>(사무처장,<br>50%) | 공통<br>(40%) | 부서별(60%)              |                    |                      |            |
|    |                    |                      |                    |                      |             | 부서지표<br>설정평가<br>(40점) | 목표<br>달성도<br>(60점) | 부서표창<br>전년평가<br>신규사업 | 포상<br>신규사업 |

자료 : 문화재단 근무평정 운영규칙 재구성

아울러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최종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평가대상별 등급은 별표 6의 등급별 인원 배분표에 따라 결정하되, 대표이사는 전체 등급별 배분비율을 S등급은 10%이내, A등급은 20%이내, B등급은 40%이상, C등급은 20%이상, D등급은 10%이상 비율 원칙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매년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을 위하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역량평정과 업적평정을 하여야 하고, 가·감점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종합 근무평정을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문화재단(기획경영팀)은 2020. 1월에 실시한 2019년 근무성적평정을 추진하면서 평가대상자 42명 전원에 대하여 부서별 평가 점수를 잘못 계산하여

반영하였고, 포상 가점도 18명에게 과다 반영 및 2명에게 누락 반영하였다.

또한 2021 1월에 실시한 2020 근무성적평정을 추진하면서 평가대상자 39명 전원에 대하여 부서별 평가 점수를 잘못 계산하여 반영하였고, 포상 가점도 12명에게 과다 반영하였다.

그로 인하여 [표 2] “근무성적평정 오류 현황”과 같이 2019년에는 5명이 정당한 등급보다 상승하였고, 2명은 등급이 하락하였으며, 2020년에는 1명이 정당한 등급보다 상승하였고, 2명은 하락하는 등 인사행정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근무성적평정 오류 현황(2020~2021년)

(단위 : 점)

| 연도           | 직급        | 성명  | 역량평가(30점) |          | 업적평가(70점) |          | 가·감점  |          | 총점    |          | 등수 |          | 평가등급 |          |
|--------------|-----------|-----|-----------|----------|-----------|----------|-------|----------|-------|----------|----|----------|------|----------|
|              |           |     | 재단        | 감사<br>결과 | 재단        | 감사<br>결과 | 재단    | 감사<br>결과 | 재단    | 감사<br>결과 | 재단 | 감사<br>결과 | 재단   | 감사<br>결과 |
| 2019<br>(7명) | 6급        | ○○○ | 29.55     | 29.55    | 61.51     | 61.08    | 2.50  | 0.50     | 93.56 | 91.13    | 3  | 6        | B    | C        |
|              | 8급        | ○○○ | 29.10     | 29.10    | 60.01     | 59.58    | 2.00  |          | 91.11 | 88.68    | 9  | 10       | B    | C        |
|              |           | ○○○ | 29.10     | 29.10    | 61.36     | 61.54    |       |          | 90.46 | 90.64    | 11 | 8        | C    | B        |
|              |           | ○○○ | 29.85     | 29.85    | 63.36     | 63.54    | 1.50  | -0.50    | 94.71 | 92.89    | 4  | 5        | A    | B        |
|              | 무기<br>계약직 | ○○○ | 29.40     | 29.40    | 61.84     | 62.30    | -1.00 | -0.50    | 90.24 | 91.20    | 10 | 9        | C    | B        |
|              |           | ○○○ | 28.35     | 28.35    | 65.34     | 65.80    | 1.00  |          | 94.68 | 94.15    | 2  | 4        | A    | B        |
|              |           | ○○○ | 29.25     | 29.25    | 61.55     | 62.05    | -0.25 | -0.25    | 90.55 | 91.05    | 9  | 10       | B    | C        |
| 2020<br>(3명) | 6급        | ○○○ | 26.25     | 26.25    | 59.18     | 60.07    | 1.50  | 1.50     | 86.93 | 87.82    | 5  | 5        | C    | B        |
|              | 운영직       | ○○○ | 25.65     | 25.65    | 60.16     | 60.22    | 1.25  | -0.75    | 87.06 | 85.12    | 6  | 10       | B    | C        |
|              |           | ○○○ | 24.60     | 24.60    | 57.87     | 58.55    | 2.00  | 2.00     | 84.47 | 85.15    | 10 | 9        | C    | B        |

자료 : 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3. 의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승진임용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 Ⅲ. 직원의 인사 ⑤ 보직 관리 가. 보직 관리의 원칙에 따르면 출자·출연의 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전보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인사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전 직원에 대한 청렴, 4대폭력예방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이 포함된 연간 5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실적을 승진임용 및 근무평가 등 인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문화재단은 2019. 1월 2019년도 재단 직원 교육훈련계획(안)을 수립하면서 4대 폭력예방교육(4시간), 개인정보보호교육(1시간), 소프트웨어 관리 교육(1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1시간), 윤리·청렴교육(2시간), 장애인인식개선 교육(1시간) 등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승진인사를 할 경우 소속 직원이 법정 의무교육을 포함한 연간 5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실적이 있는 지 확인한 후 승진인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문화재단(기획경영팀)은 2020. 3. 30.과 2020. 6. 30. 8급 직원에 대한 7급으로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총 7명의 승진임용 대상자들의 50시간 교육이수 실적 및 의무교육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승진임용하여야 하는데도 [표 4] “승진자별 의무교육시간 충족여부 현황”과 같이 50시간 교육이수 실적만 확인하고 의무교육 충족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승진인사를 추진하였다.

[표 4] 승진자별 의무교육시간 충족여부 현황(2020년)

| 승진일            | 대상자           | 교육이수<br>(50시간)<br>충족 | 의무교육 충족             |                     |                      |                     |                |                      | 최종<br>결과 |
|----------------|---------------|----------------------|---------------------|---------------------|----------------------|---------------------|----------------|----------------------|----------|
|                |               |                      | 4대폭력<br>예방<br>(4시간) | 개인정보<br>보호<br>(1시간) | 소프트웨어<br>관리<br>(1시간) | 산업안전<br>보건<br>(1시간) | 윤리·청렴<br>(2시간) | 장애인<br>인식개선<br>(1시간) |          |
| 2020.<br>○. ○. | ○○○<br>(8→7급) | 충족<br>(55시간)         | 충족<br>(4시간)         | 미충족                 | 충족<br>(2시간)          | 미충족                 | 충족<br>(11시간)   | 미충족                  | 미<br>충족  |
|                | ○○○<br>(8→7급) | 충족<br>(102시간)        | 충족<br>(4시간)         | 미충족                 | 충족<br>(2시간)          | 미충족                 | 충족<br>(52시간)   | 충족<br>(6시간)          | 미<br>충족  |
| 2020.<br>○. ○. | ○○○<br>(8→7급) | 충족<br>(50시간)         | 충족<br>(4시간)         | 미충족                 | 충족<br>(2시간)          | 미충족                 | 충족<br>(25시간)   | 미충족                  | 미<br>충족  |
|                | ○○○<br>(8→7급) | 충족<br>(57.5시간)       | 미충족                 | 미충족                 | 미충족                  | 미충족                 | 충족<br>(9시간)    | 미충족                  | 미<br>충족  |
|                | ○○○<br>(8→7급) | 충족<br>(64시간)         | 충족<br>(4시간)         | 미충족                 | 미충족                  | 미충족                 | 충족<br>(11시간)   | 미충족                  | 미<br>충족  |
|                | ○○○<br>(8→7급) | 충족<br>(51시간)         | 충족<br>(4시간)         | 미충족                 | 충족<br>(2시간)          | 미충족                 | 충족<br>(20시간)   | 미충족                  | 미<br>충족  |
|                | ○○○<br>(8→7급) | 충족<br>(51시간)         | 충족<br>(4시간)         | 미충족                 | 충족<br>(2시간)          | 미충족                 | 충족<br>(26시간)   | 미충족                  | 미<br>충족  |

자료 : 문화재단 교육이수 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하여 승진 자격요건이 미충족된 자가 승진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고, 당초 의무교육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문화재단은 근무성적평정 집계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담당자의 입력착오와 부서장의 결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하였다면서 2022년 상반기 중 근무평가시스템 전면 개편을 준비 중임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근무성적평정 업무와 승진인사 업무를 소홀히 한 ○○팀장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근무평정 운영규칙」상의 부서별 평가 절차, 방법, 기준 및 가점부여 기준 등을 명확히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제도상 개선)

# 전라남도

## 훈계·주의요구

제 목 채용관련 서류전형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남문화재단(기획경영팀)

훈 계 대 상 자 전남문화재단 기획경영팀 ○○ ○○○

내 용

### 1. 업무개요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은 2019. 12월부터 2022. 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채용공고 후 필기시험(2회만 해당),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하여 일반·연구직 4명, 운영직 8명, 기간제 14명을 채용하였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 III. 직원의 인사 ④ 시험의 방법 가.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직원 임용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의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문화재단은 2020. 8. 5. 남도소리올림터 시설관리 분야 운영직 1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면서 1. 공기조화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보일러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건물 시설관리 2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중 1개 이상 해당자를

필수 자격요건으로 공고하였다.

또한 2020. 8. 20. 일반직 8급 1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면서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행정업무 1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필수 자격요건으로 공고하면서 경력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증빙이 가능한 기간만 인정한다고 공고하였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 시 공고된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적격자만을 서류전형 적격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문화재단(기획경영팀)은 2020. 8. 5. 채용공고 후 2020. 8. 24. 실시한 남도소리울림터 시설관리 분야 운영직 응모자 ‘○○○’에 대하여 [표] “필수자격요건 적격여부 현황”와 같이 필수요건 자격증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자이면서 경력 측면에서도 건물 시설관리 2년 이상 경력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자격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인데도 서류전형에서 적격자로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2020. 8. 20. 채용공고 후 2020. 10. 13. 실시한 일반직 8급 분야 응모자 ‘○○○’에 대하여 [표] “필수자격요건 적격여부 현황”와 같이 필수요건인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행정업무 1년 이상 실무 경력자가 아닌 비영리법인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1년 2개월의 근무한 자인데도 이를 필수요건 경력으로 인정하여 서류전형에서 적격자로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필수자격 요건 적격여부 현황

| 채용 분야    | 응시자 | 공고문 상 필수자격 요건                       | 응시자 제출사항                  | 서류전형 |                       |
|----------|-----|-------------------------------------|---------------------------|------|-----------------------|
|          |     |                                     |                           | 재단   | 감사 결과                 |
| 운영직      | ○○○ |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자                  | 건설기계 조종사                  | 적격   | 부적격                   |
|          |     | ① 공기조화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 불충족 (미소유)             |
|          |     | ② 보일러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근무(2.2년)<br>(선실 장비 설치) | 충족   | 불충족<br>(근무경력 증빙서류 없음) |
| 일반직 (8급) | ○○○ |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br>행정업무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재단 근무<br>(1년 2개월)       | 충족   | 불충족<br>(자격요건기관 해당 안됨) |

자료 : 문화재단 채용 관계서류 재구성

그로 인하여 응시자격에 미달된 자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문화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채용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기획경영팀 ○○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채용관련 서류전형에 있어서 당초 공고문에 명시한 채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적격자로 처리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전라남도

## 개선·주의요구

제 목 가점 관련 규정 불합리 및 인사원칙 미공개

관계기관(부서) 전남문화재단(기획경영팀)

내 용

### 1. 업무개요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월말 기준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표창 실적 등을 합산하여 직급별로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진인사를 하고 있다.

### 2. 가점 관련 규정 불합리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근무평정 운영규칙」 제11조 제6호에 따르면 [표 1] “근무평정 단계별 평정자 현황”과 같이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가 완료되면 평정담당자는 별표 5에 따라 근무평정의 대상기간 중에 발생한 가산 및 감점 등을 환산하여 종합 근무평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근무평정 단계별 평정자 현황

| 피평가자 | 1차 평가 |     | 2차 평가 |     | 3차 평가 |         |
|------|-------|-----|-------|-----|-------|---------|
|      | 평가자   | 비중  | 평가자   | 비중  | 평가자   | 비중      |
| 팀 장  | 사무처장  | 70% | 대표이사  | 30% |       |         |
| 팀 원  | 팀장    | 50% | 사무처장  | 50% | 대표이사  | ±1등급 조정 |

자료 : 문화재단 근무평정 운영규칙 [별표 3]

또한 같은 규칙 별표 5에 따르면 근무평정 대상기간 중 소속 직원과 부서에서 외부기관과 내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표창 실적에 대하여 근무평정 시 [표 2] “표창 관련 근무평정 가산점 인정 현황”과 같이 개인에게는 0.5점에서 3점까지, 부서에는 1점에서 3점까지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표 2] 표창 관련 근무평정 가산점 인정 현황

| 구 분  | 내 용                | 점수                      |                         |
|------|--------------------|-------------------------|-------------------------|
|      |                    | 개인                      | 부서                      |
| 외부기관 | 대통령 표창             | 3점<br>(2019. 8월 이전은 5점) | 3점<br>(2019. 8월 이전은 5점) |
|      | 장관급 표창             | 2점<br>(2019. 8월 이전은 3점) | 2점<br>(2019. 8월 이전은 3점) |
|      | 전남도지사, 정부부처 차관급 표창 | 1점<br>(2019. 8월 이전은 2점) | 1점<br>(2019. 8월 이전은 2점) |
|      | 직무관련 대외기관장 표창      | 1점                      | 1점                      |
| 내부기관 | 재단 이사장(대표이사) 표창    | 0.5점                    | -                       |

자료 : 문화재단 근무평정 운영규칙 [별표 5]

따라서 문화재단은 소속 직원과 부서에서 근무평정 대상기간(1~12월) 중에 취득한 외부기관과 내부기관으로부터 표창 실적에 대한 가산점 정확하게 부여하되 표창 가산점으로 인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문화재단(기획경영팀)은 2018. 7. 5.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직원 임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근무실적 평정점(70점), 경력평정점(20점), 표창 점수(10점)로 구성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표 3] “승진후보자 명부 상 표창 점수 인정 현황”과 같이 개인별로 0.5점에서 5점까지의 표창 점수를 최고 10점 내로 부여하고 있는데도 2018. 7. 9.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근무평정 운영규칙」 개정을 통하여 근무평정 대상기간(1~12월) 중 표창 실적이 있는 직원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표 2] “표창 관련 근무평정 가산점 인정 현황”과 같이 취득한 표창 실적에 따라 0.5점에서 3점까지의 가산점을 추가 부여하고 있다.

[표 3] 승진후보자 명부 상 표창 점수 인정 현황

| 구 분  | 내 용           | 점수   |
|------|---------------|------|
| 외부기관 | 대통령 표창        | 5점   |
|      | 국무총리 및 장관급 표창 | 3점   |
|      | 도지사 표창        | 2점   |
|      | 대외기관장 표창      | 1점   |
| 내부기관 | 대표이사 표창       | 0.5점 |

자료 : 문화재단 근무평정 운영규칙 [별표 5]

또한 표창 실적에 따른 가산점 및 점수 부여시기와 관련하여 근무성적평정 시는 표창 실적이 있는 당해연도 근무성적평정에서만 표창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는 해당직급 근무기간 중에 취득한 표창은 취득한 당 해연도에서부터 승진하기 전 해당연도까지 모든 승진후보자 명부에 누적하여 표창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표 4]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표창 실적 예시

| 구 분      | 2019. 10월, 2020. 2월, 2021. 1월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받고 2021. 3월에 승진한 경우<br>(승진인사가 2020. 3월, 2021. 3월에 승진인사가 있다는 가정) |
|----------|----------------------------------------------------------------------------------------------------------|
| 근무성적평정   | 2019년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 1점, 2020년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 1점, , 2021년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 1점 부여 부여                              |
| 승진후보자 명부 | 2020. 3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2점, 2021. 3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3점                                                     |

그로 인하여 표창 실적이 근무성적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에 중복으로 반영되어 승진인사에서 표창 실적이 과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 2. 인사원칙 미공개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 Ⅲ. 직원의 인사 ⑤ 보직관리 라. 인사원칙의 사전공개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직원 임용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의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 등의 인사계획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사전에 소속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공정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문화재단(기획경영팀)은 2019. 12월부터 2022. 2월까지 6번<sup>2)</sup>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를 하면서 인사운영 방향·기준 등의 인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단순히 6번의 인사 시기별로 인사대상, 인사시기, 인사인원 만을 인사예고한 후 승진 또는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이 저해되었고 소속 직원들이 인사와 관련하여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문화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①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근무평정 운영규칙」과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직원 임용에 관한 규칙」에서 중복 적용 중인 표창 가점이 중복적용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제도상 개선)

② 앞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소속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2) 2020. 3. 26.(정기인사 : 승진 및 전보), 2020. 6. 30.(수시인사 : 승진 및 전보), 2020. 8. 28.(수시인사 : 전보), 2021. 3. 31.(정기인사 : 전보), 2021. 9. 2.(수시인사 : 전보), 2021. 12. 31.(수시인사 : 전보)

# 전라남도

##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문화예술 보조사업 업무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문화재단(문화사업팀, 문화예술교육팀, 공연예술진흥팀, 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 ○○과, ○○과

내 용

### 1. 업무개요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 1] “문화예술 지원사업 수행 현황”과 같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문화예술 지원사업 수행 현황(2019~2022년)

| 사업연도 | 보조사업                   | 사업비(백만원) |        |        |       |
|------|------------------------|----------|--------|--------|-------|
|      |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      | 합계                     | 80,207   | 33,881 | 38,709 | 7,617 |
| 2019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48개 사업 | 18,437   | 8,120  | 8,953  | 1,364 |
| 2020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47개 사업 | 22,559   | 8,997  | 11,401 | 2,161 |
| 2021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38개 사업 | 20,569   | 9,163  | 9,377  | 2,029 |
| 2022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24개 사업 | 18,642   | 7,601  | 8,978  | 2,063 |

자료 : 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미이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채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전라남도지사의 교부결정 내용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보조사업의 결과를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이내에 전라남도지사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합성 심사 후 지방보조금을 확정 받아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문화재단(문화사업팀, 문화예술팀)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종료된 11건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전라남도 에 제출하여야 했는데도 2022. 3. 25. 감사일 현재 [표 2] “문화예술 지원사업 정산검사 미이행 현황”과 같이 사업 정산을 마무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표 2] 문화예술 지원사업 정산검사 미이행 현황(2019~2022년)

(단위 : 천원)

| 구분   | 보조사업명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
| 합계   | 11건           | 11,378,200 | 10,692,918 | 685,282 |
| 2019 | 공연장상주단체       | 766,000    | 762,412    | 3,588   |
| "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2,344,000  | 2,240,977  | 103,023 |
| 2020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 788,000    | 759,551    | 28,449  |
| "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2,344,000  | 2,139,268  | 204,732 |
| 2021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 698,000    | 630,306    | 67,694  |
| "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2,344,000  | 2,253,110  | 90,890  |
| "    | 예술로남도문화예술특구조성 | 150,000    | 143,919    | 6,081   |
| "    |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 1,501,200  | 1,382,495  | 118,705 |
| "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 | 213,000    | 207,503    | 5,497   |
| "    | 찾아가는예술캠프      | 30,000     | 9,448      | 20,552  |
| "    | 예술동아리교육지원     | 200,000    | 163,929    | 36,071  |

자료 : 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문화재단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11건 보조사업의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서 집행 보조금 10,692백만원을 확정받지 못하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문화재단(문화사업팀, 문화예술교육팀, 공연예술진흥팀, 문화재연구소)은 2022. 3. 25. 감사일 현재 [별표 1] “정산 미확정된 보조금 반환금 명세”와 같이 사업이 완료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28개 사업 869,039천원 정산 보고서를 전라남도(○ ○과, ○ ○과)로부터 정산검사 확정 통보를 받지 못해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다.

### 3.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가. 행사 추진 관련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② 경비 나. 세부 집행요령 9) 행사·홍보비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행사·홍보비에서 집행되어야 하고, 행사는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며,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기준」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sup>3)</sup>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다.

3)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하는데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기준」의 관련기준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은 행사·홍보비로 편성하고, 직접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계약법」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문화재단(문화재연구소)은 2020년과 2021년에 추진한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문화행사를 수행하면서 행사·홍보비로 편성하여야 할 2건의 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고, 「공모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재단에서 자체 심의만으로 사업수행자를 [표 3] “마한문화권 관련 민간경상보조 편성 행사 수행 현황”과 같이 사업수행 단체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여 보조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3] 마한 문화권 관련 민간경상보조 편성 행사 수행 현황

| 사업연도 | 보조사업명               | 사업비(천원) | 예산과목     | 수행단체 |
|------|---------------------|---------|----------|------|
| 합계   | 2개 사업               | 245,050 |          |      |
| 2020 | 제1회 마한 학술경연대회       | 147,150 | 민간경상사업보조 | ○○○○ |
| 2021 | 마한문화유산 답사 및 미술대회 운영 | 97,900  | 민간경상사업보조 | ○○○○ |

자료 : 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행사·홍보비로 편성되어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에 부쳐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마한문화유산 답사 및 미술대회 운영’ 등 2개 사업의 245,050천원의 사업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자체 심의로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행사대행업종이 상기 사업의 입찰에 참여 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 사례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1). 관계법령(판단기준)

문화재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이나 교육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② 경비 나.

세부 집행요령 9) 행사·홍보비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는 행사·홍보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② 경비 나. 세부 집행요령 3) 운영수당에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은 법령·조례 내부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 「재단법인 전라남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심사수당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공모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심사 및 자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문화예술 보조사업 행사와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이나 강사료 등 행사지원을 위한 사례비 성격의 수당은 행사·홍보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문화재단(문화사업팀, 문화예술교육팀)은 문화예술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 12. 30.부터 2022. 3. 4.까지 [별표 2] “문화재단 사례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명세”과 같이 행사·홍보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전문가 자문회의 사례비 35명 10,710천원이 회의운영비(220-01)나 심사수당(220-02) 예산에서 부적정하게 집행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문화재단은 행사·홍보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수당이 회의운영비와 심사수당에서 집행되는 부적정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도 수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미이행

###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용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의 필요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사업,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 그 밖에 지역 문화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Ⅱ. 예산편성의 원칙 - 2 독립채산의원칙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을 대행(또는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 계약 체결 시 사업별 체결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수탁사업 운영규칙」 제3조에 따르면 정부나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탁받거나, 대행하는 경우, 채용역 사업의 계약은 위탁기관과 맺은 협약 및 계약서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명의로 체결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탁받거나, 대행하는 경우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위탁수수료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을 하여야 한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문화재단(문화사업팀, 문화예술교육팀, 공연예술진흥팀, 문화재연구소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 수탁사업 공연상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64,035백만원 112개 사업을 [별표 3] “위·수탁 협약 미체결 사업 명체”와 같이 위·수탁 협약 체결 없이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수탁사업 수수료가 협약 체결에 의해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 절차, 위탁수수료 등이 상호 협의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행정절차가 생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문화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 ①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 ○○과장, ○○과장,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감사일 2022. 3. 25. 기준 정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39개 사업 879,731천원의 지방보조금 정산과 반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시정)
- ②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도 수탁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위·수탁 협약, 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 표] 생 략

# 전라남도 개선요구

제 목 전남도립국악단 수당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문화재단(공연예술진흥팀, 도립국악단)

내 용

## 1. 업무개요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은 「전라남도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라 2019. 4. 15.부터 2022. 4. 14.까지 전라남도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전라남도립국악단 및 어린이국악단 공연계획 수립·시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탁 관리하고 있다.

## 2.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제작 등 사례금 지급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문화재단은 재단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보수규정」에 정하고 있고, 도립국악단원의 보수 산정 및 지급, 각종 수당 지급 기준 등 직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도립국악단 설치 조례」에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여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4에 따르면 상임단원에 지급되는 급여는 본봉, 직책수당, 예능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고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게 공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I. 예산집행 10대 원칙 ⑥ 내부규정에 근거한 관련경비 집행에 따르면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연봉 외 부가적으로 단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등에 지급근거, 지급대상,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문화재단(공연예술진흥팀, 도립국악단)은 「전라남도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4에 급여와 공연수당에 관한 지급 규정만 있을 뿐 소속 단원이 본연 업무 이외의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나 국악단 작품 제작 시 외부참여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근거 및 지급금액 등은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표 1] “국악단 사례금 임의 지급 현황(2020~2021년)”과 같이 2020. 3. 26. 부터 20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국악원 사례 규정을 준용하여 재단 내부 결재만으로 단원 및 외부 참여자에게 작곡료 등 34개 항목에 대하여 총 341,517,68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1] 국악단 사례금 임의 지급 현황(2020~2021년)

(단위:원)

| 연번 | 구분    | 총계          | 2020년       |            |             | 2021년       |            |             |
|----|-------|-------------|-------------|------------|-------------|-------------|------------|-------------|
|    |       |             | 소계          | 내부단원       | 외부참여자       | 소계          | 내부단원       | 외부참여자       |
|    |       | 341,517,680 | 133,176,800 | 22,090,000 | 111,086,800 | 208,340,880 | 29,017,760 | 179,323,120 |
| 1  | 작곡료   | 35,570,000  | 11,490,000  | 7,490,000  | 4,000,000   | 24,080,000  | 24,080,000 | -           |
| 2  | 객원료   | 61,871,680  | 21,600,000  | -          | 21,600,000  | 40,271,680  | -          | 40,271,680  |
| 3  | 원고료   | 11,900,000  | 2,100,000   | -          | 2,100,000   | 9,800,000   | 1,276,800  | 8,523,200   |
| 4  | 출연료   | 7,700,800   | 1,936,800   | -          | 1,936,800   | 5,764,000   | -          | 5,764,000   |
| 5  | 편곡료   | 19,958,400  | 17,100,000  | 11,800,000 | 5,300,000   | 2,858,400   | 2,858,400  | -           |
| 6  | 분장료   | 5,000,000   | 1,000,000   | -          | 1,000,000   | 4,000,000   | -          | 4,000,000   |
| 7  | 영상촬영료 | 2,000,000   | 2,000,000   | -          | 2,000,000   | -           | -          | -           |
| 8  | 영상편집료 | 800,000     | 800,000     | -          | 800,000     | -           | -          | -           |
| 9  | 대본료   | 11,927,440  | 900,000     | -          | 900,000     | 11,027,440  | -          | 11,027,440  |
| 10 | 극본료   | 8,000,000   | 8,000,000   | -          | 8,000,000   | -           | -          | -           |
| 11 | 작품지도료 | 6,000,000   | 6,000,000   | -          | 6,000,000   | -           | -          | -           |
| 12 | 지휘료   | 2,800,000   | 2,800,000   | 2,800,000  | -           | -           | -          | -           |

| 연번 | 구분            | 총계         | 2020년      |      |            | 2021년      |         |            |
|----|---------------|------------|------------|------|------------|------------|---------|------------|
|    |               |            | 소계         | 내부단원 | 외부참여자      | 소계         | 내부단원    | 외부참여자      |
| 13 | 연출료           | 30,000,000 | 10,000,000 | -    | 10,000,000 | 20,000,000 | -       | 20,000,000 |
| 14 | 드라마트<br>루그료   | 14,000,000 | 5,000,000  | -    | 5,000,000  | 9,000,000  | -       | 9,000,000  |
| 15 | 안무료           | 17,528,000 | 5,000,000  | -    | 5,000,000  | 12,528,000 | -       | 12,528,000 |
| 16 | 구성료           | 5,000,000  | 2,000,000  | -    | 2,000,000  | 3,000,000  | -       | 3,000,000  |
| 17 | 작창료           | 4,200,000  | 2,200,000  | -    | 2,200,000  | 2,000,000  | -       | 2,000,000  |
| 18 | 조연출료          | 15,625,600 | 5,000,000  | -    | 5,000,000  | 10,625,600 | -       | 10,625,600 |
| 19 | 무대감독료         | 3,000,000  | 3,000,000  | -    | 3,000,000  | -          | -       | -          |
| 20 | 음향디자인료        | 15,000,000 | 5,000,000  | -    | 5,000,000  | 10,000,000 | -       | 10,000,000 |
| 21 | 조명디자인료        | 12,500,000 | 5,000,000  | -    | 5,000,000  | 7,500,000  | -       | 7,500,000  |
| 22 | 무대디자인료        | 9,200,000  | 5,000,000  | -    | 5,000,000  | 4,200,000  | -       | 4,200,000  |
| 23 | 사진촬영비         | 4,500,000  | 4,500,000  | -    | 4,500,000  | -          | -       | -          |
| 24 | 미디어작업료        | 1,000,000  | 1,000,000  | -    | 1,000,000  | -          | -       | -          |
| 25 | 무대운영<br>스테프로  | 1,000,000  | 1,000,000  | -    | 1,000,000  | -          | -       | -          |
| 26 | 음향감독료         | 2,000,000  | -          | -    | -          | 2,000,000  | -       | 2,000,000  |
| 27 | 수업지도비         | 802,560    | -          | -    | -          | 802,560    | 802,560 | -          |
| 28 | 영상디자인료        | 5,200,000  | -          | -    | -          | 5,200,000  | -       | 5,200,000  |
| 29 | 극작료           | 5,000,000  | -          | -    | -          | 5,000,000  | -       | 5,000,000  |
| 30 | 미디어프로<br>그래밍료 | 2,000,000  | -          | -    | -          | 2,000,000  | -       | 2,000,000  |
| 31 | 악보 채보료        | 273,600    | -          | -    | -          | 273,600    | -       | 273,600    |
| 32 | 음악작업료         | 2,000,000  | -          | -    | -          | 2,000,000  | -       | 2,000,000  |
| 33 | 영상연출료         | 2,800,000  | -          | -    | -          | 2,800,000  | -       | 2,800,000  |
| 34 | 공연사회          | 15,359,600 | 3,750,000  | -    | 3,750,000  | 11,609,600 | -       | 11,609,600 |

자료 : 전라남도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감사기간 중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한 결과 [표 2] “타 기관 예술단 사례금 지급규정 제정 현황”과 같이 ○○국악원, ○○(○○예술단), ○○(○○국악원)은 단원과 소속 사업으로 시행되는 제반 사례지급의 기준을 별도 규정으로 마련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타 기관 예술단 사례금 지급규정 제정 현황

| 구 분       | ○○국악원 | ○○예술단 | ○○국악원 |
|-----------|-------|-------|-------|
| 사례금 규정 여부 | 규정    | 규정    | 규정    |
| 사례금 지급 여부 | 지급    | 지급    | 지급    |

자료 : 전라남도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사례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문화재단의 국악단 운영의 공정성과 업무 신뢰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어린이국악단 주말교육 지도 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문화재단은 어린이국악단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2. 3. 25. 감사일 현재까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주말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르면 어린이국악단원의 지도를 위하여 기량이 우수한 도립국악단원 중에서 지도교사를 위촉하고 작품의 성격에 따라 객원 예술감독이 추천한 전문예술인을 지도교사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7조에 따르면 객원 예술감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도교사의 경우 단원의 지도에 따른 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교육훈련비는 각종 교육훈련과정 경비(교육)여비, 교육위탁비, 외래교육강사수당 등에 지급할 수 있고, 직원 공공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용 및 자체 규정에 따른 대학원 등 교육과정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어린이국악단원 지도에 따른 지도 수당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직원 교육훈련을 위해 전문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외래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만 교육훈련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며 어린이국악단 주말교육 등 재단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성 경비는 행사운영비 등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문화재단(공연예술진흥팀, 도립국악단)은 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객원예술감독과 외부지도교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과 「○○국

악원과 그 소속 사례지급 규정」을 임의로 적용하면서

[표 3] “어린이국악단 지도수당 부적정 지급 현황(2019~2021년)”과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도수당으로 총 83,63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46,670,400원은 외부 지도교사에 대해 교육훈련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그 결과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 신뢰도를 훼손하였다.

[표 3] 어린이국악단 지도수당 부적정 지급 현황(2019~2021년)

| 구 분        |       | 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       | 83,639,000 | 26,277,000 | 30,210,000 | 27,152,000 |
| 국악단원       | 교육훈련비 | 22,274,480 | 5,094,600  | 9,672,170  | 7,507,710  |
|            | 행사운영비 | 2,656,340  | 2,062,100  | 255,360    | 338,880    |
| 외부지도<br>교사 | 교육훈련비 | 46,670,400 | 12,822,720 | 17,513,760 | 16,333,920 |
|            | 행사운영비 | 4,943,040  | 3,985,440  | 364,800    | 592,800    |
| 기타(원천세)    |       | 7,094,740  | 2,312,140  | 2,403,910  | 2,378,690  |

자료 : 전라남도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문화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독립국악단원의 본연업무 외 창작활동이나 국악단 작품 제작 시 지급되는 사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 등에 명시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 ② 어린이국악단원 지도교사에 대한 지도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제도상 개선)

[별 표] 생 략

#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체결 내역 미공개 등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문화재단(기획경영팀, 문화사업팀, 문화예술교육팀, 공연예술진흥팀, 문화재연구소, 도립국악단)

내 용

## 1. 업무개요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창작·보급 활동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각종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2. 전라남도문화재단 계약 체결 내역 미공개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문화재단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재무회계관리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재단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51조에 따르면 입찰방법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6절에 따르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 공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 등 계약 체결 건에 대하여 문화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문화재단(기획경영팀, 문화사업팀, 문화예술교육팀, 공연예술진흥팀, 문화재연구소, 도립국악단)은 [표 1] “문화재단 계약체결 및 미공개 현황(2019~2022년)”과 같이 2019. 12. 3.부터 2022. 3. 23.까지 계약 체결한 383건에 대하여 2022. 3. 25. 감사일 현재 185건을 재단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표 1] 문화재단 계약내역 미공개 현황(2019~2022년)

(단위: 원)

| 회계연도 | 계약건수 | 계약금액(B)       | 미공개 계약건수 | 미공개 계약금액      | 비 고               |
|------|------|---------------|----------|---------------|-------------------|
| 계    | 383  | 3,901,611,200 | 185      | 1,550,881,770 |                   |
| 2019 | 5    | 29,207,200    | 2        | 10,716,000    |                   |
| 2020 | 151  | 136,8141,700  | 90       | 670,028,620   |                   |
| 2021 | 210  | 2,340,412,300 | 78       | 726,187,150   |                   |
| 2022 | 17   | 163,850,000   | 15       | 143,950,000   | 2022.3.25. 감사일 현재 |

제출 : 전라남도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2. 전남도립국악단 의상 제작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공연의상 제작 시에는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계약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을 명백히 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문화재단(공연예술진흥팀, 독립국악단)은 2020. 3. 27.부터 2021. 12. 21. 까지 정기공연 등에 필요한 의상 제작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연예술 완성도 제고를 위해 제작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유로

[별표] “독립국악단 의상제작 계약체결 현황(2019~2022년)”과 같이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지 않고 전자문서가 아닌 자체 계약문서를 작성하여 16개 업체와 25회에 걸쳐 292,776,300원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문화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문화재단이사장은 앞으로 미공개한 계약 내용을 즉시 재단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 표] 생 략

#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전남관광○○○○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경영지원실)

내 용

##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관광재단”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남관광○○○○사업(2건, 10억원)<sup>4)</sup>을 추진하고 있다.

## 2. 전남관광○○○○사업 인력 선발 부적정

### 1) 전남관광○○○○센터 센터장 선발 부적정

####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전라남도관광재단 인사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 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 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애초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남관광○○○○사업 인력 모집선발 공고’에 따르면 [표 1] “전남관광○○○○센터 센터장 선발 공고 현황”과 같이 센터장 모집인원은 1명으로 한

4) 2020년 5억원(국비 50%, 도비 50%), 2021년 5억원(국비 50%, 도비 50%)

다고 되어 있다.

[표 1] 전남관광○○○○센터 센터장 선발 공고 현황

| 선발분야           | 직급  | 모집인원 | 담당직무                                                                                                                                        |
|----------------|-----|------|---------------------------------------------------------------------------------------------------------------------------------------------|
| 전남관광○○<br>○○사업 | 센터장 | 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관광○○○○센터 총괄운영 및 관리</li> <li>• 전남관광○○○○사업대상지역 관리 및 관광기획자 활동 지원</li> <li>•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li> </ul> |

자료 : 관광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관광재단은 센터장을 선발할 때에는 ‘전남관광○○○○사업 인력 모집선발 공고’와 같이 센터장 1명을 선발하여야 하고 센터장을 2명으로 변경하여 선발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한 후에 2명을 선발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관광재단(경영지원실)은 전남관광○○○○센터 센터장을 선발하면서 [표 1] “전남관광○○○○센터 센터장 선발 공고 현황”과 같이 1명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한 후에 [표 2] “전남관광○○○○사업 담당 인력 최종합격자 공고 현황”과 같이 최종합격자는 1명으로 공고하였는데도 아무런 근거없이 [표 3] “전남관광○○○○사업 센터장 위촉 현황”과 같이 최경자 등 2명을 위촉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전남관광○○○○사업 담당 인력 최종합격자 공고 현황

| 공고번호     | 공고일        | 선발분야 | 최종합격자 |
|----------|------------|------|-------|
| 2021-006 | 2021.03.26 | 센터장  | ○○○   |

자료 : 관광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전남관광○○○○사업 센터장 위촉 현황

| 위촉분야 | 위촉일자       | 선발분야 | 위촉대상 |
|------|------------|------|------|
| 센터장  | 2021.04.26 | 센터장  | ○○○  |
| 〃    | 〃          | 〃    | ○○○  |

자료 : 관광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2) 전남관광○○○○사업 인력 선발 가산점 적용 부적정

###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관광재단 인사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공개 경쟁시험 및 경력 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재단 누리집, 전라남도 누리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 배수, 가점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남관광○○○○사업 인력 모집선발 공고’에 따르면 ③ 응시자격, 다. 우대사항에 따르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주민등록등본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전라남도에 합산 거주 기간 5년 이상인 자’, ‘차량 운전가능자, 차량소지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은 가점 기준에 해당하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주민등록등본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전라남도에 합산 거주 기간 5년 이상인 자’, ‘차량 운전가능자, 차량소지자’에 대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전남관광○○○○사업 인력 선발계획(안)’ 등에 미리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관광재단(경영지원실)은 가점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 평가기준을 미리 마련하지도 않았는데도 [표 4] “전남관광○○○○사업 인력 선발 평정점수 합계표 현황”과 같이 ‘전남관광○○○○사업 담당 인력 선발 결과 보고’ 문서에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이 없는 ‘관광○○’, ‘관련 경험’, ‘자격증’, ‘차량’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점수 합계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전라남도에 합산 거주 기간 5년 이상인 자’는 가산점을 누락하여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표 4] 전남관광○○○○사업 인력 선발 평정점수 합계표 현황

| 구분          | 순위 | 응시자 | 심 사 위 원 |     |     | 계   | 평 균  | 가산점                       | 최종<br>점수 |
|-------------|----|-----|---------|-----|-----|-----|------|---------------------------|----------|
|             |    |     | ★★★     | ★★★ | ★★★ |     |      |                           |          |
| 센터장<br>지원   | 1  | ○○○ | 92      | 89  | 88  | 269 | 89.6 | 관광○○ 5<br>관련경험 4<br>자격증 4 | 102.6    |
|             | 2  | ○○○ | 88      | 65  | 82  | 235 | 78.3 | 관광○○ 5<br>관련경험 6<br>차량 1  | 90.3     |
|             | 3  | ○○○ | 84      | 60  | 68  | 212 | 70.6 | 자격증 10<br>차량 1            | 81.6     |
| 관광기획자<br>지원 | 1  | ○○○ | 92      | 89  | 85  | 266 | 88.6 | 관련경험 2<br>자격증 2<br>차량 1   | 93.6     |
|             | 2  | ○○○ | 90      | 89  | 86  | 265 | 88.3 | ○○경험 3<br>차량 1            | 92.3     |
|             | 3  | ○○○ | 68      | 58  | 71  | 197 | 65.6 | 관련경험 2<br>차량 1            | 68.6     |
|             | 4  | ○○○ | 69      | 65  | 67  | 201 | 67   | 차량 1                      | 68       |
|             | 5  | ○○○ | 69      | 63  | 59  | 191 | 63.6 | ○○경험 3<br>차량 1            | 67.6     |

자료 : 관광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관련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구직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전남관광○○○○사업 인력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부적정

###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관광재단(경영지원실)은 [표 5]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위반사업 현황”과 같이 2020년 전남관광○○○○사업에 대하여 2021. 06. 30.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제출기한을 163일 위반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하였다.

[표 5]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위반사업 현황

(단위 : 원)

| 사업연도 | 사업명             | 사업비         | 교부일         | 실적보고일<br>(적법한 보고일)           | 위반내용          |
|------|-----------------|-------------|-------------|------------------------------|---------------|
| 2020 | 2020 전남관광○○○○사업 | 500,000,000 | 2020.05.18. | 2021.12.09.<br>(2021.06.30.) | 실적보고일 163일 위반 |

자료 : 관광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및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기한 내 점검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전남관광○○○○사업 관련 인력 선발시 공고내용을 준수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선발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 기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경영지원실)

내 용

##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관광재단”이라 한다)은 2020. 7월부터 2022. 2월까지 86건의 수의계약과 5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였다.

## 2. 수의계약 및 제안서 평가 내역 미공개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관광재단 회계관리규정」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 관광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한 경쟁계약, 지정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32조에 따르면 입찰 방법 및 그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관계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상 평가위원명은 비공개로 하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수의계약 내역과 제안서 평가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관광재단은 [별표 1] “관광재단 수의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2020. 7월부터 2022. 3월까지 ‘순천 아랫장 물품지원 및 안내판 설치공사’ 등 8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2022. 3. 15. 사전조사일 이후 2022. 3. 18.에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또한 [별표 2] “관광재단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2020. 7월부터 2022. 3월까지 ‘무안국제공항 스마트쉼터 구축 공사’ 등 5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한 제안서 평가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제안서 제출 업체가 어느 심사위원에게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5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각 항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관광재단은 [표] “관광재단 부적정 수의계약 내역”과 같이 ‘전라남도 대표공연관광 콘텐츠 제작·기획’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이고,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서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관광재단 부적정 수의계약 내역

(단위 : 천원)

| 연번 | 사업명                                     | 예정<br>가격 | 최초<br>계약<br>금액 | 계약일         | 수의계약 사유                                | 계약자  |
|----|-----------------------------------------|----------|----------------|-------------|----------------------------------------|------|
| 1  | 전라남도 대표 공연관광 콘텐츠<br>기획·제작               | 210,000  | 210,000        | 2021.11.02. | 특수지역에서의<br>공사·용역으로서 사실상<br>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 |
| 2  | 포스트코로나시대 신성장동력<br>프로젝트 복합리조트 조성<br>연구용역 | 48,000   | 48,000         | 2021.06.03.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br>위한 용역계약을 할<br>필요가 있는 경우 | ○○○○ |

자료 : 전라남도관광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취지를 훼손하였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제안서를 평가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법령에 부합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 표] 생 략

# 전라남도 통보

제 목 범죄 경력조회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경영지원실)

내 용

##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관광재단’이라 한다)는 「전라남도관광재단 인사관리 규정」 등에 따라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및 그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등을 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2022년 사이에 경영지원팀 ○○○ ○○(○급) 등 총 12명을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 인사업무를 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관광재단 인사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등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재단 직원이 관계법규 및 재단의 정관이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39조 및 제4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임직원의 징계를 「전라남도관광재단 인사관리 규정」 제51조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은 신규 채용 시 범죄사실 여부와 근무 직원들의 직위해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징계 및 채용 등 인사업무에 활용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관광재단(경영지원실)은 2020. 7. 1.부터 2022. 3. 25. 감사일 현재 까지 범죄경력조회<sup>5)</sup>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기간 중 신규 채용한 12명의 임용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경찰청 홈페이지 상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조회한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으나, 범죄경력조회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했을 우려가 있고, 소속 직원 중에 음주운전 등의 비위가 있어도 이를 확인할 수가 없어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직원 채용 시 응시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응시자로 하여금 경찰청 홈페이지의 범죄경력을 열람하여 범죄여부를 확인하는 등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

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출연기관 직원들에 대하여는 범죄경력 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범죄경력 회보서 또한 본인확인용으로만 발급되며, 제출용은 금지되고 있음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